광명 시티프라디움 에듀하임 입주자모집공고

청약Home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
	청약Home 앱 설치 바로가기	

※ 단지 주요정보 (분양문의) 1899-6851

주택유형	해당지역	기타지역	규제지역여부
민영	경기도 광명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 (2024.09.18. 이전부터 계속 거주)	경기도 광명시 2년 미만 및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재당첨제한	전매제한	거주의무기간	분양가상한제	택지유형
10년	3년	없음	미적용	민간택지

구분	입주자모집공고일	특별공급 접수일	일반공급 1순위 접수일		일반공급 2순위 접수일	당첨자발표일	서류접수	계약체결
			해당지역	기타지역				
일정	2026.09.18.(금)	2026.09.29.(화)	2026.09.30.(수)	2026.10.01.(목)	2026.10.02.(금)	2026.10.12.(월)	2026.10.14.(수)~ 2026.10.19.(월)	2026.10.24.(토)~ 2026.10.26.(월)

1 공통 유의사항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홈 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광명 시티프라디움 에듀하임 견본주택」에서는 분양 상담전화 (☎1899-6851)를 통해 입주자모집공고 관련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담 전화 폭주 및 신청자별 복잡한 상황 등으로 인해 간혹 유선상으로 착오 안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화 상담 내용은 청약을 위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약 자격 및 조건 등은 신청자 본인이 입주자모집공고문과 관련 서류를 통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청약 자격 미숙지 및 착오 신청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신청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2026.06.1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2024.10.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24.10.01.부터 사전당첨자 지위를 유지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당첨자 및 그 세대원이 다른 주택(APT, 불법행위재공급, 규제지역 무순위)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사전당첨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여 사전청약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 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신청자격	특별공급						일반공급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신생아	1순위	2순위
청약통장 자격요건	6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충족			1순위(**24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충족)				가입
세대주 요건	-	-	-	필요	**필요**	**필요**	**필요**	-
소득 또는 자산기준	-	-	적용	-	적용	**적용**	-	-

※ 단, 기관추천 특별공급 중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1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24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분

※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분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에 한하여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청약신청 내용과 실제 청약자격의 일치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에 계약 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와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APT, 불법행위재공급, 규제지역 무순위)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청약홈 및 LH청약플러스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각 1건씩 중복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간 또는 일반공급간 중복청약 시 모두 무효 처리)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됩니다.(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 시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며, 사용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하고,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분은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됩니다.

■ 2018.12.11.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호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무주택세대주"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를 말함

■ 2018.12.11.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 참조)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실거래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0조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한국부동산원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한 공급유형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급유형	당첨자 선정	예비입주자 선정	동호수 결정
특별공급	유형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름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500%**까지 추첨으로 선정	특별공급/일반공급 구분 없이 주택형별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
일반공급	순위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름	(1순위)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5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가점순으로 선정(동점 시 추첨) (2순위)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입주자 수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추첨으로 선정	

- 특별공급 유형별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다른 특별공급 유형의 청약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기관추천 예비대상자 포함)을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이후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물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주택형별 특별공급 청약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주택형별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를 초과할 경우 2순위 접수분은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2019.12.06.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 수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 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됩니다.
- 특별공급 잔여물량은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일반공급 잔여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이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다른 주택의 당첨자 발표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 체결은 가능하며 다른 주택의 당첨 내역은 무효 처리됩니다.

■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18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s://광명시티프라디움.com)**에 공개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고,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 처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1조)

-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함), 최하층 주택의 분양금액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금액보다 높은 경우는 최하층 우선 배정하지 않습니다.
-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5세 이상인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 **제2호**「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이 있는 경우에는 청약 시 최하층의 주택 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합니다.
-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분과 제3호에 해당하는 분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분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 최하층 우선배정 신청자가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보다 많은 경우 최하층이 아닌 층을 배정받을 수 있으며, 적은 경우에는 최하층 우선배정 미신청자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2019.11.01.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출입국관리법」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상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 또는 연간 183일을 초과(거주제한기간이 2년인 주택은 각 연도별 183일을 말함) 하여 국외에 거주한 기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체류한 경력이 있으면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는 불인정하나 기타지역 거주자로는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3)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 청약통장 관련 기준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전환 이후 청약예금 → 청약저축 재전환 불가)
-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한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이거나 주거지 변경 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예치금액 변경 없이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 청약예금의 신청 가능 주택규모 변경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예치금 충족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 **종전통장(청약예금, 청약부금)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 기한 : <u>최초 청약접수일 전일까지</u>** 전환개설 완료 시 청약 신청가능 (단, 청약자격 및 순위 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산정)

※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하는 경우, <u>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u>까지** 전환개설 완료하여야 청약 신청이 가능하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 (단, 국민주택 청약 시 기존 청약통장가입일을 기준으로 산정)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주택법」제65조 및「주민등록법」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6조에 따라「주택법」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음이 확인될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아래와 같이 청약신청 유형별 사용 가능한 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유형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신한인증서	카카오인증서
APT	O						

※ 단, APT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 중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유형의 청약신청자는 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2 단지 유의사항

■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6.09.18.(금)**입니다. (청약자격 요건 중 기간, 나이, 지역우선공급 등의 판단기준일)

■ 본 주택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광명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 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 양육, 형제자매 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신청자 중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경기도 광명시 2년 이상 거주자가(2024.09.18. 이전부터 계속 거주)** 우선합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구 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1순위		일반공급 2순위	당첨자발표	서류접수	계약체결
		해당지역	기타지역				
일 정	2026.09.29.(화)	2026.09.30.(수)	2026.10.01.(목)	2026.10.02.(금)	2026.10.12.(월)	2026.10.14.(수)~ 2026.10.19.(월)	2026.10.24.(토)~ 2026.10.26.(월)
방 법	▪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 (현장접수) 사업주체 견본주택	▪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 (현장접수) 청약통장 가입은행			▪ (PC·모바일) 청약홈	▪「광명 시티프라디움 에듀하임」견본주택 방문 (10:00~17:00)	
장소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현장접수 : 견본주택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현장접수 : 청약통장 가입은행				▪ 견본주택 : 경기도 광명시 일직동 511-2 ▪ 반드시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방문 ▪ 접수 방법, 일정 및 운영시간 등 자세한 사항은 추후 안내 예정 ※ 예비입주자 서류제출 및 동·호수 추첨, 계약체결 일정은 추후 별도 안내 예정임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사업주체 견본주택 현장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합니다.(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취소는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가능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 불가합니다.

※ 모바일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모바일 청약 시,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라며,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은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 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게 되며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본 아파트 청약이 불가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당첨된 주택의 구분	적용기간(당첨자 발표일로부터)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제1항 제6호)	10년

※ (예외1) 2024.03.25.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의3에 따라 신혼부부·생애최초·신생아 특별공급 신청 시, 배우자의 재당첨 제한 시작일이 혼인신고일 전인 경우에는 당첨자 발표일 기준 배우자의 재당첨 제한 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더라도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 (예외2) 2025.03.31.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의3에 따라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청약신청자 본인의 재당첨 제한 시작일이 혼인신고일 전인 경우에는 당첨자발표일 기준 본인의 재당첨 제한 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더라도 1회에 한해 재당첨 가능합니다(혼인특례 사용하여 청약신청).

※ (예외3)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세대원 간 재당첨제한 적용 주택에 중복당첨 시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구분		처리방법
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	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
	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수도권 외 지역에 거주하여도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해당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은 불가함)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투기과열지구인 경기도 광명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1 규정에 의거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서 및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입주 예정시기 등 거래대상 주택의 이용계획의 신고를 의무화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으로서,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공급받는 최초 계약자(수분양자)는 허가제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으나, 최초 공급 이후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별도의 허가절차를 득해야 합니다. 당 사업지가 위치한 경기도 광명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국토교통부공고 제2025-1219호)으로, 거래 대상의 토지면적(대지지분)이 6㎡ 초과일 경우 토지거래허가 대상에 해당됩니다. 이에 따라 본 아파트의 전 주택형은 토지거래허가 대상으로 소유권 행사(전매, 매매, 의무거주기간, 주택처분 등)에 제한이 있으니 청약 및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내용은 추후 정부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본 주택의 전매제한은 최초 당첨자발표일로부터 적용되며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전매제한기간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다만, 그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3년)**	

※ 본 주택은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으로 전매제한은 「주택법」 제64조 및 「주택법 시행령」 제73조 규정에 의거 입주자로 선정된 날(당첨자 발표일 2026.10.12.)부터 3년(단,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때까지)까지 해당되어 전매 또는 매매 시 규제 대상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매금지 등의 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시점 관련 법규의 적용을 받으며, 향후 관련 법규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인지세 납부 관련 안내

- 계약자 부담 부분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분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가산세 등)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아파트 공급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인지세 납부 대상으로 「인지세법」 제1조 제2항에 의거 분양계약 체결 시 사업주체와 분양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정부수입인지 형태로 균등(각각 50%)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전자수입인지를 구입하여 계약서에 첨부)
- 발코니 확장계약서 및 추가선택품목 계약서는 동일 계약당사자가 작성한 공급계약서와 하나의 계약내용을 이루는 보완문서로서, 「인지세법」 제5조(보완문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기재금액 변경 시의 세액 계산)에 따라 계약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인지세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재금액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납부세액	총액	2만원	4만원	7만원	15만원	35만원
	사업주체부담액	1만원	2만원	3만5천원	7만5천원	17만5천원
	분양계약자부담액	1만원	2만원	3만5천원	7만5천원	17만5천원

※ 부동산 등기(최초 분양계약자와 최종 매수자의 인지세 납부의무 이행 확인)와는 무관하게 중간 전매계약도 인지세법에 따른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부동산 거래계약서의 실제거래 가격(분양대금+프리미엄)을 기재금액으로 하여 해당되는 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정부수입인지는 취급금융기관(우체국, 은행) 또는 전자수입인지 사이트(www.e-revenuestamp.or.kr)에서 발급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금융결제원(☎1577-5500)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부수입인지는 분양권 매매 당사자뿐만 아니라 물건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나 등기 대행하는 법무사도 구매하여 첨부할 수 있습니다.
※ 정부수입인지는 1회에 한하여 출력되므로 직접출력 시 반드시 프린터 상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발행 불가)
※ 인지세 납부 등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자료실(인지세 자주 묻는 상담사례)에서 확인하시거나 세무서(소비담당)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이후 부적격 당첨, 공급질서 교란행위, 통장매매, 위장전입 등의 사유로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에 인지세 환불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 점 양지하여야 합니다
■ 2026.06.15. 시행된 내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은 작성 당시 법령 및 정책 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작성하였으며, 이후 정책변경 및 법 개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사업주체에게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3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광명시 주택과-32154호(2026.09.16.)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경기도 광명시 소하동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 A6BL
■ **공급규모** : 공동주택(**아파트) 지하 2층, 지상 22층 6개동 총 426세대 중 일반분양 426세대**
[특별공급 236세대(기관추천 43세대, 다자녀가구 43세대, 신혼부부 64세대, 노부모부양 13세대, 생애최초 30세대, 신생아 43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시기** : **2029년 03월 예정**(공정, 공사도급변경계약 및 인허가 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하기로 합니다.)
■ **공급대상**

(단위: ㎡, 세대)

주택 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 표기 (타입)	주택공급면적(㎡)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 등)	계약 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총공급 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일반공급 세대수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기관 추천	다자녀 가구	신혼 부부	노부모 부양	생애 최초	신생아	계		
2026 000453	01	059.9742A	59A	59.9742	18.5296	78.5038	47.5470	126.0508	43.5616	21	2	2	3	1	1	2	11	10	1
	02	059.7421B	59B	59.7421	18.5593	78.3014	47.3631	125.6645	43.4493	87	8	8	13	2	6	8	45	42	4
	03	084.8481A	84A	84.8481	24.3323	109.1804	67.2669	176.4473	60.5840	86	9	9	13	3	7	9	50	36	4
	04	084.9648B	84B	84.9648	24.1873	109.1521	67.3593	176.5114	60.5683	21	2	2	3	1	1	2	11	10	1
	05	084.9558C	84C	84.9558	24.2280	109.1838	67.3523	176.5361	60.5859	105	12	11	16	3	8	11	61	44	5
	06	084.9796D	84D	84.9796	24.5768	109.5564	67.3711	176.9275	60.7927	21	2	2	3	1	1	2	11	10	1
	07	084.9149E	84E	84.9149	25.3601	110.2750	67.3198	177.5948	61.1914	85	8	9	13	2	6	9	47	38	4
	합 계									**426**	**43**	**43**	**64**	**13**	**30**	**43**	**236**	**190**	**20**

※ 상기 세대당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입주 시 지적정리에 따른 대지면적 확정으로 인해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대지지분 면적 합산 시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현되어 합산 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분양예정 건축시설물의 대지권(지분)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유지분으로 배분합니다.
※ 특별공급 미청약분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일반공급 세대수는 특별공급의 청약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주택형의 구분은 입주자모집공고 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홍보 제작물 등이 변경되어 표현될 수 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동 방지를 위해 필히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 신청 시 [주택형] 또는 [형] 란은 입주자모집공고상 주택형(㎡)으로 기재하오니 평형으로 오해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 대신 넓이표시 법정 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평형 환산방법 : 공급면적(㎡) × 0.3025 또는 공급면적(㎡) ÷ 3.3058]
※ 전용면적은 안목치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단, 소수점 이하 면적변경에 대해서는 정산금액이 없음)
※ 최하층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최하층으로 합니다. (최하층 우선 배정세대는 총 공급세대에 포함된 세대수입니다.)
※ 동일한 주택형이라 하여도 타입별 세부면적과 해당 동, 라인, 층은 상이할 수 있으니 입주자모집공고 내용 확인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견본주택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형 표시 안내**

공고상 (청약신청주택형)	059.9742A	059.7421B	084.8481A	084.9648B	084.9558C	084.9796D	084.9149E
약식표기	59A	59B	84A	84B	84C	84D	84E

※ 주택형 구분은 입주자모집공고 및 청약신청 시('청약홈') 구분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카탈로그/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동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공급세대수**

구분(약식표기)		59A	59B	84A	84B	84C	84D	84E	합 계
기관추천 특별공급	국가유공자	-	-	1	-	1	-	-	**2**
	장기복무 제대군인	-	1	-	-	1	-	-	**2**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	-	-	-	1	-	1	**2**
	장애인	1	-	1	1	1	1	-	**5**
	중소기업 근로자	-	1	-	-	1	-	1	**3**
	철거민	1	6	7	1	7	1	6	**29**
	소계	2	8	9	2	12	2	8	**43**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해당시·도(광명시 및 경기도) 거주자(50%)	1	4	5	1	6	1	5	**23**
	기타지역(서울특별시 및 인천광역시) 거주자(50%)	1	4	4	1	5	1	4	**20**
신혼부부 특별공급		3	13	13	3	16	3	13	**64**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1	2	3	1	3	1	2	**13**
생애최초 특별공급		1	6	7	1	8	1	6	**30**
신생아 특별공급		2	8	9	2	11	2	9	**43**
합 계		**11**	**45**	**50**	**11**	**61**	**11**	**47**	**236**

※ 주택형별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 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세대, 원)**

약식 표기	동·라인	층구분	세대수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40%)				잔금
				대지비	건축비	계	1차	2차	1회(10%)	2회(10%)	3회(10%)	4회(10%)	50%
							계약 시	1개월 내	2027.04.30.	2027.11.30.	2028.05.31.	2028.11.30.	입주지정일
59A	205동 6호	2층	1	502,157,000	266,843,000	769,000,000	30,000,000	46,900,000	76,900,000	76,900,000	76,900,000	76,900,000	384,500,000
		3층	1	521,747,000	277,253,000	799,000,000	30,000,000	49,900,000	79,900,000	79,900,000	79,900,000	79,900,000	399,500,000
		4층	1	534,807,000	284,193,000	819,000,000	30,000,000	51,900,000	81,900,000	81,900,000	81,900,000	81,900,000	409,500,000
		5층~7층	3	541,337,000	287,663,000	829,000,000	30,000,000	52,900,000	82,900,000	82,900,000	82,900,000	82,900,000	414,500,000
		8층~10층	3	547,867,000	291,133,000	839,000,000	30,000,000	53,900,000	83,900,000	83,900,000	83,900,000	83,900,000	419,500,000
		11층~13층	3	554,397,000	294,603,000	849,000,000	30,000,000	54,900,000	84,900,000	84,900,000	84,900,000	84,900,000	424,500,000
		14층~16층	3	560,927,000	298,073,000	859,000,000	30,000,000	55,900,000	85,900,000	85,900,000	85,900,000	85,900,000	429,500,000
		17층~19층	3	567,457,000	301,543,000	869,000,000	30,000,000	56,900,000	86,900,000	86,900,000	86,900,000	86,900,000	434,500,000
		20층이상	3	573,987,000	305,013,000	879,000,000	30,000,000	57,900,000	87,900,000	87,900,000	87,900,000	87,900,000	439,500,000
59B	202동 1호 203동 1호 204동 2호 205동 1호	1층	3	487,791,000	259,209,000	747,000,000	30,000,000	44,700,000	74,700,000	74,700,000	74,700,000	74,700,000	373,500,000
		2층	4	507,381,000	269,619,000	777,000,000	30,000,000	47,700,000	77,700,000	77,700,000	77,700,000	77,700,000	388,500,000
		3층	4	526,971,000	280,029,000	807,000,000	30,000,000	50,700,000	80,700,000	80,700,000	80,700,000	80,700,000	403,500,000
		4층	4	533,501,000	283,499,000	817,000,000	30,000,000	51,700,000	81,700,000	81,700,000	81,700,000	81,700,000	408,500,000
		5층~7층	12	540,031,000	286,969,000	827,000,000	30,000,000	52,700,000	82,700,000	82,700,000	82,700,000	82,700,000	413,500,000
		8층~10층	12	546,561,000	290,439,000	837,000,000	30,000,000	53,700,000	83,700,000	83,700,000	83,700,000	83,700,000	418,500,000
		11층~13층	12	553,091,000	293,909,000	847,000,000	30,000,000	54,700,000	84,700,000	84,700,000	84,700,000	84,700,000	423,500,000
		14층~16층	12	559,621,000	297,379,000	857,000,000	30,000,000	55,700,000	85,700,000	85,700,000	85,700,000	85,700,000	428,500,000
		17층~19층	12	566,151,000	300,849,000	867,000,000	30,000,000	56,700,000	86,700,000	86,700,000	86,700,000	86,700,000	433,500,000
		20층이상	12	572,681,000	304,319,000	877,000,000	30,000,000	57,700,000	87,700,000	87,700,000	87,700,000	87,700,000	438,500,000
84A	203동 2호 204동 1호 205동 2호 205동 3호	1층	2	688,915,000	366,085,000	1,055,000,000	30,000,000	75,500,000	105,500,000	105,500,000	105,500,000	105,500,000	527,500,000
		2층	4	708,505,000	376,495,000	1,085,000,000	30,000,000	78,500,000	108,500,000	108,500,000	108,500,000	108,500,000	542,500,000
		3층	4	721,565,000	383,435,000	1,105,000,000	30,000,000	80,500,000	110,500,000	110,500,000	110,500,000	110,500,000	552,500,000
		4층	4	734,625,000	390,375,000	1,125,000,000	30,000,000	82,500,000	112,500,000	112,500,000	112,500,000	112,500,000	562,500,000
		5층~7층	12	741,155,000	393,845,000	1,135,000,000	30,000,000	83,500,000	113,500,000	113,500,000	113,500,000	113,500,000	567,500,000
		8층~10층	12	747,685,000	397,315,000	1,145,000,000	30,000,000	84,500,000	114,500,000	114,500,000	114,500,000	114,500,000	572,500,000
		11층~13층	12	754,215,000	400,785,000	1,155,000,000	30,000,000	85,500,000	115,500,000	115,500,000	115,500,000	115,500,000	577,500,000
		14층~16층	12	760,745,000	404,255,000	1,165,000,000	30,000,000	86,500,000	116,500,000	116,500,000	116,500,000	116,500,000	582,500,000
		17층~19층	12	767,275,000	407,725,000	1,175,000,000	30,000,000	87,500,000	117,500,000	117,500,000	117,500,000	117,500,000	587,500,000
		20층 이상	12	773,805,000	411,195,000	1,185,000,000	30,000,000	88,500,000	118,500,000	118,500,000	118,500,000	118,500,000	592,500,000
84B	202동 3호	2층	1	716,341,000	380,659,000	1,097,000,000	30,000,000	79,700,000	109,700,000	109,700,000	109,700,000	109,700,000	548,500,000
		3층	1	735,931,000	391,069,000	1,127,000,000	30,000,000	82,700,000	112,700,000	112,700,000	112,700,000	112,700,000	563,500,000
		4층	1	742,461,000	394,539,000	1,137,000,000	30,000,000	83,700,000	113,700,000	113,700,000	113,700,000	113,700,000	568,500,000
		5층~7층	3	748,991,000	398,009,000	1,147,000,000	30,000,000	84,700,000	114,700,000	114,700,000	114,700,000	114,700,000	573,500,000
		8층~10층	3	755,521,000	401,479,000	1,157,000,000	30,000,000	85,700,000	115,700,000	115,700,000	115,700,000	115,700,000	578,500,000
		11층~13층	3	762,051,000	404,949,000	1,167,000,000	30,000,000	86,700,000	116,700,000	116,700,000	116,700,000	116,700,000	583,500,000
		14층~16층	3	768,581,000	408,419,000	1,177,000,000	30,000,000	87,700,000	117,700,000	117,700,000	117,700,000	117,700,000	588,500,000
		17층~19층	3	775,111,000	411,889,000	1,187,000,000	30,000,000	88,700,000	118,700,000	118,700,000	118,700,000	118,700,000	593,500,000
		20층이상	3	781,641,000	415,359,000	1,197,000,000	30,000,000	89,700,000	119,700,000	119,700,000	119,700,000	119,700,000	598,500,000

약식 표기	동·라인	층구분	세대수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40%)				잔금
				대지비	건축비	계	1차	2차	1회(10%)	2회(10%)	3회(10%)	4회(10%)	50%
							계약 시	1개월 내	2027.04.30.	2027.11.30.	2028.05.31.	2028.11.30.	입주지정일
84C	201동 1호 201동 3호 201동 5호 206동 1호 206동 2호	2층	5	705,240,000	374,760,000	1,080,000,000	30,000,000	78,000,000	108,000,000	108,000,000	108,000,000	108,000,000	540,000,000
		3층	5	724,830,000	385,170,000	1,110,000,000	30,000,000	81,000,000	111,000,000	111,000,000	111,000,000	111,000,000	555,000,000
		4층	5	731,360,000	388,640,000	1,120,000,000	30,000,000	82,000,000	112,000,000	112,000,000	112,000,000	112,000,000	560,000,000
		5층~7층	15	737,890,000	392,110,000	1,130,000,000	30,000,000	83,000,000	113,000,000	113,000,000	113,000,000	113,000,000	565,000,000
		8층~10층	15	744,420,000	395,580,000	1,140,000,000	30,000,000	84,000,000	114,000,000	114,000,000	114,000,000	114,000,000	570,000,000
		11층~13층	15	750,950,000	399,050,000	1,150,000,000	30,000,000	85,000,000	115,000,000	115,000,000	115,000,000	115,000,000	575,000,000
		14층~16층	15	757,480,000	402,520,000	1,160,000,000	30,000,000	86,000,000	116,000,000	116,000,000	116,000,000	116,000,000	580,000,000
		17층~19층	15	764,010,000	405,990,000	1,170,000,000	30,000,000	87,000,000	117,000,000	117,000,000	117,000,000	117,000,000	585,000,000
		20층이상	15	770,540,000	409,460,000	1,180,000,000	30,000,000	88,000,000	118,000,000	118,000,000	118,000,000	118,000,000	590,000,000
84D	206동 5호	2층	1	716,994,000	381,006,000	1,098,000,000	30,000,000	79,800,000	109,800,000	109,800,000	109,800,000	109,800,000	549,000,000
		3층	1	739,849,000	393,151,000	1,133,000,000	30,000,000	83,300,000	113,300,000	113,300,000	113,300,000	113,300,000	566,500,000
		4층	1	746,379,000	396,621,000	1,143,000,000	30,000,000	84,300,000	114,300,000	114,300,000	114,300,000	114,300,000	571,500,000
		5층~7층	3	752,909,000	400,091,000	1,153,000,000	30,000,000	85,300,000	115,300,000	115,300,000	115,300,000	115,300,000	576,500,000
		8층~10층	3	759,439,000	403,561,000	1,163,000,000	30,000,000	86,300,000	116,300,000	116,300,000	116,300,000	116,300,000	581,500,000
		11층~13층	3	765,969,000	407,031,000	1,173,000,000	30,000,000	87,300,000	117,300,000	117,300,000	117,300,000	117,300,000	586,500,000
		14층~16층	3	772,499,000	410,501,000	1,183,000,000	30,000,000	88,300,000	118,300,000	118,300,000	118,300,000	118,300,000	591,500,000
		17층~19층	3	779,029,000	413,971,000	1,193,000,000	30,000,000	89,300,000	119,300,000	119,300,000	119,300,000	119,300,000	596,500,000
		20층이상	3	782,294,000	415,706,000	1,198,000,000	30,000,000	89,800,000	119,800,000	119,800,000	119,800,000	119,800,000	599,000,000
84E	201동 2호 202동 2호 205동 5호 206동 3호	1층	1	685,650,000	364,350,000	1,050,000,000	30,000,000	75,000,000	105,000,000	105,000,000	105,000,000	105,000,000	525,000,000
		2층	4	705,240,000	374,760,000	1,080,000,000	30,000,000	78,000,000	108,000,000	108,000,000	108,000,000	108,000,000	540,000,000
		3층	4	724,830,000	385,170,000	1,110,000,000	30,000,000	81,000,000	111,000,000	111,000,000	111,000,000	111,000,000	555,000,000
		4층	4	731,360,000	388,640,000	1,120,000,000	30,000,000	82,000,000	112,000,000	112,000,000	112,000,000	112,000,000	560,000,000
		5층~7층	12	737,890,000	392,110,000	1,130,000,000	30,000,000	83,000,000	113,000,000	113,000,000	113,000,000	113,000,000	565,000,000
		8층~10층	12	744,420,000	395,580,000	1,140,000,000	30,000,000	84,000,000	114,000,000	114,000,000	114,000,000	114,000,000	570,000,000
		11층~13층	12	750,950,000	399,050,000	1,150,000,000	30,000,000	85,000,000	115,000,000	115,000,000	115,000,000	115,000,000	575,000,000
		14층~16층	12	757,480,000	402,520,000	1,160,000,000	30,000,000	86,000,000	116,000,000	116,000,000	116,000,000	116,000,000	580,000,000
		17층~19층	12	764,010,000	405,990,000	1,170,000,000	30,000,000	87,000,000	117,000,000	117,000,000	117,000,000	117,000,000	585,000,000
		20층이상	12	770,540,000	409,460,000	1,180,000,000	30,000,000	88,000,000	118,000,000	118,000,000	118,000,000	118,000,000	590,000,000

■ **공통 유의사항**

- 2009.04.01.「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주거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 신청 바랍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기타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주민공동시설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본 주택은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주택으로 상기 공급금액은 분양가 자율화에 따라 주택형별, 층별에 따라 차등을 두어 책정한 금액입니다.

- 전용면적은 안목치수로 산정하며 그 외 면적은 중심선 치수로 산정합니다.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모두 소유권이전등기 비용, 취득세가 미포함된 금액입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발코니 확장비용, 추가 선택품목 옵션 등의 비용이 미포함 되었으며, 주택 공급계약 체결 시 별도 계약을 통해 선택이 가능합니다.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주현관 등 주거 공용면적과 지하 주차장, 관리/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의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주택형별 지하 주차장 및 기타 공용부분에 대한 금액이 상기 분양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단지 내 상가)은 별도 분양 대상으로서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공급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불출일)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을 기준으로 함) 또한, 연체료 납부 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에도 연체료가 발생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중도금은 사업주체가 대출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한 대출취급기관의 중도금 대출을 통해 납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중도금 대출의 알선 및 안내를 지원할 뿐, 대출 실행을 보장하지 않으며, 대출 승인 여부 및 대출 가능 금액 등은 관계 법령 및 대출취급기관의 심사기준에 따라 최종 결정됩니다. 따라서 대출 미신청자 또는 수분양자의 사유(보증제한, 신용불량, 대출한도 부족, 금융기관 심사 결과 등)로 인해 대출이 불가능하거나 일부만 실행되는 경우에도, 수분양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따라 중도금을 직접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 시 연체료 부과 또는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중도금 대출취급기관과 관련한 사항은 별도 안내 예정)
- 중도금 대출을 희망하는 수분양자는 계약체결 후 사업주체가 지정하는 대출취급기관과 별도로 중도금 대출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중도금 대출의 승인 또는 실행을 보장하지 않으며, 대출 여부는 대출취급기관의 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세부적인 대출신청 일정 등은 별도 안내 예정)
- 잔금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60조 규정에 의거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납부해야 하며, 다만 임시사용승인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은 입주일에 납부하고, 전체 입주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납부해야 합니다.(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절차 등의 이유로 실 입주일과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본 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대출에 따른 보증수수료 및 인지대 등의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대출에 관한 추가비용은 대출신청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단, 사업주체는 사업주체의 알선조건에 충족하는 계약자에게만 대출을 알선함)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봅니다.
- 본 표시재산의 구조물 등 제반 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한 이의제기 및 그 밖의 인쇄물이나 구두 약정의 내용은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 본 아파트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 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청약(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및 분양계약 시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사본 불가)
- 상기 공급세대의 청약접수는 동별, 층별, 호별 구분 없이 주택형별로 접수하며, 동·호수는 주택형 내에서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한국부동산원)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됩니다.
- 본 아파트의 판매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 및 판매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변경된 분양 및 판매조건은 소급해서 적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수분양자는 이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는 실입주자를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 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힐 경우에는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본 아파트의 지번(공급위치), 단지 명칭, 동 표시, 외부 색채와 계획, 조경시설물 등이 관계기관 심의 및 협의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청약신청 및 계약장소에서 발생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업체, 부동산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는 사업주체, 시공사와 무관한 사항입니다.
- 입주개시 전 특정 일자를 계약자들에게 통보하여 사전방문 및 점검토록 할 예정입니다.
- 특별공급 미청약분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일반공급 세대수는 특별공급의 청약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의 용도별 대지지분은 각 시설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아파트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지적확정측량 결과 및 공부정리 결과에 따라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 내에서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단, 소수점 이하의 면적변경에 따른 분양가 정산은 없습니다.)
- 견본주택에는 59B, 84A, 84E 타입이 설치되어 있으며, 이외 타입은 견본주택에 설치되어 있지 않으므로 청약신청 시 공급안내문(카탈로그 등)에 표기된 타입별 평면 등의 형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은 정부가 출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보증 받은 공동주택입니다.
- 2025.10.15. 발표된「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따라 잔금대출에 대한 LTV, DSR 등 대출규제가 강화되어, 입주 시 금융기관의 심사기준, 관계 법령 및 정부 정책 등에 따라 개인별

대출한도가 축소되거나 잔금대출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잔금대출의 승인 또는 실행을 보장하지 않으며, 대출 승인 여부 및 대출 가능 금액은 금융기관의 심사 결과에 따라 최종 결정됩니다. 따라서 잔금대출이 제한되거나 실행되지 않더라도 이를 이유로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계약자는 계약조건에 따라 잔금을 직접 납부하여야 하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은 한국주택금융공사 건설자금보증서를 취득하여 농협은행 주식회사, 주식회사 전북은행, 주식회사 광주은행 및 주식회사 부산은행에서 대출 지원받은 사업장으로, 해당 대출은 입주 시 입주자 명의로 대환 될 수 있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급계약서의 내용에 따릅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견본주택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 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함)
- 청약 및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주위 환경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사업주체의 책임이 없습니다.
- 계약 전 견본주택 모형도 및 배치도, 카탈로그 등 현황 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4 특별공급

[2025.03.31.「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의3(특별공급 신청 요건 등에 관한 특례) 개정 사항]

조항	특별공급 신청유형	내용	유의사항
제1항 (배우자의 혼인신고일 전 이력 배제)	신혼부부 생애최초 **신생아**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신고일 전 당첨된 이력**에 따른 **청약 제한사항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	- 적용횟수 제한 없음
	생애최초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신고일 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혼인신고일 전 처분완료한 경우에 한함)	
제2항 (혼인특례)	신혼부부	**청약신청자**가 **혼인신고일 전 당첨된 이력**에 따른 **청약 제한사항(재당첨 제한, 특별공급 횟수 제한)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	- **혼인특례**는 **본인 기준 1회**에 한하여 적용 가능
제3항 (출산특례)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신생아**	**'24.6.19.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또는 '24.6.19. 이후 출생한 사람을 입양한 경우 포함)가 있는 경우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더라도** 제55조에 따른 특별공급 횟수 제한에도 불구하고 청약신청 가능 → 이 경우, 특별공급의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에도 불구하고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청약신청 가능 * **기존주택 처분 조건**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함 - 1.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 조건을 승낙할 것 - 2.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에 관한 서류(「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제4항 각 호)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할 것 - 3. 공급받은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처분을 완료할 것	- **출산특례**는 **세대 기준 1회**에 한하여 적용 가능 - 특별공급 횟수 제한 외 **다른 청약 제한사항**은 배제할 수 없음 -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없는 경우 출산특례 적용 불가** - 청약신청자 및 배우자 **외의 세대원**이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거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출산특례 적용 불가

		→ 이 경우, 신혼부부, **신생아 특별공급**(공공주택 제외), 추첨제 청약신청자의 **부동산가액 산정** 시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가액은 합산하지 않음	

※ **혼인특례** 또는 **출산특례를** 사용하여 청약하려는 분은 **청약신청 시 특례 사용여부를 선택**하여야 하며, 청약신청 시 선택한 특례 사용여부는 **변경·취소할 수 없습니다.**

- 특례를 사용하여 본 주택의 특별공급 입주자 및 추가입주자로 선정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 없이 특별공급 당첨자 및 특례 사용자로 명단 관리**하며 향후 **혼인특례 사용자 본인**은 **혼인특례를 재사용할 수 없고, 출산특례 사용자가 속한 세대**는 **출산특례를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
- 특례를 사용하지 않아도 특별공급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는 분이 착오에 의해 특례를 사용한 경우라 하더라도 **특례 사용 사실은 정정될 수 없으며, 특례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분**이 특례를 사용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당첨이 취소되고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혼인특례**와 **출산특례**를 **동시에** 사용하여 청약할 수 없습니다.

※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특별공급에 당첨된 분이 공급받을 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 시점**까지 기존주택 처분 완료함을 증빙하지 못한 경우 공급계약이 취소되며, 입주가 불가합니다.

<table>
<tr><th>구분</th><th>내용</th></tr>
<tr><td>공급기준</td><td>■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및 제55조의3을 적용하는 경우 특별공급 횟수 제한 예외)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명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다만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부부는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중복청약할 수 있으며, 중복당첨 시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table>
<tr><th colspan="2">구분</th><th>처리방법</th></tr>
<tr><td colspan="2">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td><td>**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td></tr>
<tr><td rowspan="2">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td><td>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td><td>**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td></tr>
<tr><td>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td><td>모두 **부적격** 처리</td></tr>
</tabl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통장 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상 세대원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자격을 필요로 하는 특별공급 청약이 불가합니다.</td></tr>
<tr><td>무주택
요건</td><td>■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무주택세대구성원 정의는 "1. 공통 유의사항" p.2 참조)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신생아 특별공급**: 무주택세대주 요건</td></tr>
<tr><td>청약통장
자격요건</td><td>■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기관추천(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신생아 특별공급**</td></tr>
</table>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구 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함

4-1 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43세대

구분	내용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해당 기관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단,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추천기관

기관추천 특별공급 유형	관련 법규	해당 기관
철거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에 따른 해당 지역에서 철거되는 주택을 소유 및 거주한 자	광명시청 도시재생과
국가유공자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등	국가보훈부 인천지방보훈청 복지과
장기복무 제대군인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군인복지 기본법」 제10조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	국방부 국군복지단
중소기업 근로자	「중소기업인력 지원특별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성장지원과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서울시청 장애인자립지원과 경기도청 장애인 복지과 인천광역시 장애인 복지과

당첨자 선정방법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자격요건을 갖춘 분은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하므로 사업주체 및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대상자 선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확정대상자 및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분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청약접수일에 청약신청 완료해야 합니다.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되며 계약 불가)

■ 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분과 함께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되므로,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2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43세대

<table>
<tr><th>구분</th><th>내용</th></tr>
<tr><td>대상자</td><td>■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광명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과거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 가능함
■ 만 19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태아, 입양자녀 포함)이 있는 분
- 자녀는 민법상 미성년자를 말하며, 자녀가 청약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td></tr>
<tr><td>당첨자
선정방법</td><td>■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지역 → ②배점 → ③미성년 자녀수(태아,입양자녀 포함) → ④청약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분 → ⑤추첨
■ ①지역 : 해당시·도 거주자 50%(광명시 및 경기도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 50%(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영지침』제5조에 의거 주택형별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50%를 해당시·도(광명시 및 경기도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50%는 기타지역(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 단, 해당시·도에서 경쟁발생 시 해당주택건설지역(경기도 광명시 2년 이상 계속 거주) 거주자를 우선으로 선정합니다.
※ 해당지역 거주자 우선공급에서 낙첨된 자가 기타지역 거주자와 다시 경쟁하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②배점
<table>
<tr><th rowspan="2">배점항목</th><th rowspan="2">총배점</th><th colspan="2">배점기준</th><th rowspan="2">비고</th></tr>
<tr><th>기준</th><th>점수</th></tr>
<tr><td>계</td><td>100</td><td colspan="3"></td></tr>
<tr><td rowspan="3">미성년 자녀수(1)</td><td rowspan="3">40</td><td>4명 이상</td><td>40</td><td rowspan="3">-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td></tr>
<tr><td>3명</td><td>35</td></tr>
<tr><td>2명</td><td>25</td></tr>
<tr><td rowspan="3">영유아 자녀수(2)</td><td rowspan="3">15</td><td>3명 이상</td><td>15</td><td rowspan="3">-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td></tr>
<tr><td>2명</td><td>10</td></tr>
<tr><td>1명</td><td>5</td></tr>
<tr><td rowspan="2">세대구성(3)</td><td rowspan="2">5</td><td>3세대 이상</td><td>5</td><td>- 청약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td></tr>
<tr><td>한부모 가족</td><td>5</td><td>- 청약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분</td></tr>
<tr><td rowspan="3">무주택기간(4)</td><td rowspan="3">20</td><td>10년 이상</td><td>20</td><td rowspan="3">- 배우자의 직계존속(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청약신청자가 성년(만 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신고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td></tr>
<tr><td>5년 이상 ~ 10년 미만</td><td>15</td></tr>
<tr><td>1년 이상 ~ 5년 미만</td><td>10</td></tr>
<tr><td>해당 시·도</td><td>15</td><td>10년 이상</td><td>15</td><td>- 청약신청자가 성년자(만 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신고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수도권</td></tr>
</table></td></tr>
</table>

거주기간(5)		5년 이상 ~ 10년 미만	10	**(서울·경기·인천)**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 전체를 해당 시·도로 봄
		1년 이상 ~ 5년 미만	5	
입주자저축가입기간(6)	5	10년 이상	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3), (4) : 주택 소유 여부 판단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를 적용
(6) : 입주자저축 순위확인서로 확인

4-3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15% 범위 : 64세대

구분	내용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광명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동일인과의 재혼인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포함)인 분** ■ **「신생아 및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소득구분 → ②순위 → ③지역 → ④미성년 자녀수 → ⑤추첨 ■ **①소득구분**

단계	소득구분	내용
1단계	우선공급 (50%)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2단계	일반공급 (20%)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3단계	추첨공급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40% 초과하나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됨
※ 3단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순위와 관계없이 해당지역 거주자**(경기도 광명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하고,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선정

■ **②순위**

순위	내용
1순위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분
2순위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분

■ **③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경기도 광명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경기도 광명시 2년 미만 거주자 및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

비고

■ **자녀기준**

- 자녀는「민법」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를 포함
  * 현재 혼인관계인 배우자와의 자녀를 혼인신고일 전에 출생신고한 경우
- (②순위 판단 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1순위 신청 가능
- (④미성년 자녀수 판단 시) 재혼인 경우 청약신청자의 전혼자녀(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청약신청자 또는 재혼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④미성년 자녀수 판단 시) 재혼인 경우 재혼 배우자의 전혼자녀(재혼 배우자가 이전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임신·입양)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
  *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 **소득기준**

- **소득 확인 시점**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2026.09.18.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 **202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소득구분		비율	소득금액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우선공급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이하	~7,533,763원	~8,802,202원	~9,326,985원	~9,906,263원	~10,485,541원	~11,064,819원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9,040,516원	~10,562,642원	~11,192,382원	~11,887,516원	~12,582,649원	~13,277,783원
일반공급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초과 140% 이하	7,533,764원~ 10,547,268원	8,802,203원~ 12,323,083원	9,326,986원~ 13,057,779원	9,906,264원~ 13,868,768원	10,485,542원~ 14,679,757원	11,064,820원~ 15,490,747원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9,040,517원~ 12,054,021원	10,562,643원~ 14,083,523원	11,192,383원~ 14,923,176원	11,887,517원~ 15,850,021원	12,582,650원~ 16,776,866원	13,277,784원~ 17,703,710원
추첨공급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0,547,269원~	12,323,084원~	13,057,780원~	13,868,769원~	14,679,758원~	15,490,748원~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2,054,022원~	14,083,524원~	14,923,177원~	15,850,022원~	16,776,867원~	17,703,711원~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579,278)** x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 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 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 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 처리 또는 계약 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람

■ **자산기준**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13조제2항 및「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자산보유기준**

<table>
<tr><th>구분</th><th>금액</th><th colspan="2">내용</th></tr>
<tr><td rowspan="2">부동산
(건물+토지)</td><td rowspan="2">3억3,100만원
이하</td><td>건축물</td><td>-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table>
<tr><th colspan="2">건축물 종류</th><th>지방세정 시가표준액</th></tr>
<tr><td rowspan="2">주택</td><td>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td>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tr>
<tr><td>단독주택</td><td>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tr>
<tr><td colspan="2">주택 외</td><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tr>
</table></td></tr>
<tr><td>토지</td><td>-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td></tr>
</table>

4-4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공급 세대수의 3% 범위 : 13세대

구분	내용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광명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 -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한 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부양'**의 의미는 같은 주민등록지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것**을 의미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24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분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세대주일 것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지역 → ②가점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추첨 ■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경기도 광명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경기도 광명시 2년 미만 거주자 및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 ■ **②가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가점제 적용기준)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기준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청약가점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부적격 당첨 처리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청약신청자에게 있음

- 가점 산정기준 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①무주택기간	32	만 30세 미만 미혼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②부양가족수	35	0명	5	4명	25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 시에는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 산정 시 배우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합산하지 않음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가입기간은 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함

-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함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비고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

-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4-5 생애최초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7% 범위 : 30세대

구분	내용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광명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 ■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 - 모든 세대구성원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를 말함 **※ (예외)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신고일 전 주택을 소유하였다가 혼인신고일 전 처분한 이력은 배제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24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분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세대주일 것 ■ **아래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분** - 가.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청약신청자가 혼인 중이 아닌 경우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가 있는 분 - 나. 1인 가구(혼인 중이 아니면서 미혼인 자녀도 없는 분) * 1인 가구는 추첨제로만 신청 가능하며, '단독세대'와 '단독세대가 아닌 분'으로 구분됨 * '단독세대'란, 단독세대주이거나, 동거인이나 형제자매 등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분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단독세대 신청자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신청 가능함 * '단독세대가 아닌 분'이란, 직계존속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함(85㎡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신청 가능함) ■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 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분을 포함 **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소득구분 → ②지역 → ③추첨

■ **①소득구분**

단계	소득구분	내용	
1단계	**우선공급 (50%)**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2단계	**일반공급 (20%)**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3단계	**추첨공급**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1인 가구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이하이거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됨

■ **②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경기도 광명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경기도 광명시 2년 미만 거주자 및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

비고

■ **자녀기준**

- (임신·입양)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
  *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 **소득기준**

- **소득 확인 시점**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2026.09.18.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 **202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소득구분		비율	소득금액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우선공급		130% 이하	**~9,793,892원**	**~11,442,863원**	**~12,125,081원**	**~12,878,142원**	**~13,631,203원**	**~14,384,265원**
일반공급		130% 초과 160% 이하	**9,793,893원~ 12,054,021원**	**11,442,864원~ 14,083,523원**	**12,125,082원~ 14,923,176원**	**12,878,143원~ 15,850,021원**	**13,631,204원~ 16,776,866원**	**14,384,266원~ 17,703,710원**
추첨공급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2,054,022원~**	**14,083,524원~**	**14,923,177원~**	**15,850,022원~**	**16,776,867원~**	**17,703,711원~**
추첨공급	1인 가구	160% 이하	**~12,054,021원**	**~14,083,523원**	**~14,923,176원**	**~15,850,021원**	**~16,776,866원**	**~17,703,710원**
추첨공급	1인 가구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2,054,022원~**	**14,083,524원~**	**14,923,177원~**	**15,850,022원~**	**16,776,867원~**	**17,703,711원~**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579,278)** x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 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처리 또는 계약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람

■ **자산기준**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13조제2항 및「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자산보유기준**

<table>
<tr><th>구분</th><th>금액</th><th colspan="3">내용</th></tr>
<tr><td rowspan="2">부동산
(건물+토지)</td><td rowspan="2">3억3,100만원
이하</td><td>건축물</td><td colspan="2">-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table><tr><th colspan="2">건축물 종류</th><th>지방세정 시가표준액</th></tr><tr><td rowspan="2">주택</td><td>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td>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tr><tr><td>단독주택</td><td>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tr><tr><td colspan="2">주택 외</td><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tr></table></td></tr>
<tr><td>토지</td><td colspan="2">-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td></tr>
</table>

4-6 신생아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의3)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43세대

<table>
<tr><th>구분</th><th>내용</th></tr>
<tr><td>대상자</td><td>■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광명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24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분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세대주일 것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임신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가 있는 분
■ 「신생아 및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td></tr>
<tr><td>당첨자
선정방법</td><td>■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소득구분 → ②지역 → ③추첨
■ ①소득구분
<table>
<tr><th>단계</th><th>소득구분</th><th>내용</th></tr>
<tr><td>1단계</td><td>우선공급
(50%)</td><td>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td></tr>
<tr><td>2단계</td><td>일반공급
(20%)</td><td>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td></tr>
<tr><td>3단계</td><td>추첨공급</td><td>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td></tr>
</table>
※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됨
■ ②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경기도 광명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경기도 광명시 2년 미만 거주자 및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td></tr>
<tr><td>비고</td><td>■ 자녀기준
- (임신·입양)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
*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 소득기준
- 소득 확인 시점
<table>
<tr><th>입주자모집공고일</th><th>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th><th>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th></tr>
<tr><td>2026.09.18.</td><td>(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td><td>(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td></tr>
</table>
- 202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td></tr>
</table>

소득구분	비율	소득금액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우선공급	130% 이하	**~9,793,892원**	**~11,442,863원**	**~12,125,081원**	**~12,878,142원**	**~13,631,203원**	**~14,384,265원**
일반공급	130% 초과 160% 이하	**9,793,893원~ 12,054,021원**	**11,442,864원~ 14,083,523원**	**12,125,082원~ 14,923,176원**	**12,878,143원~ 15,850,021원**	**13,631,204원~ 16,776,866원**	**14,384,266원~ 17,703,710원**
추첨공급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2,054,022원~**	**14,083,524원~**	**14,923,177원~**	**15,850,022원~**	**16,776,867원~**	**17,703,711원~**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579,278)** x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 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처리 또는 계약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람

■ **자산기준**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13조제2항 및「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자산보유기준**

<table>
<tr><th>구분</th><th>금액</th><th colspan="2">내용</th></tr>
<tr><td rowspan="2">부동산
(건물+토지)</td><td rowspan="2">3억3,100만원
이하</td><td>건축물</td><td>-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table>
<tr><th colspan="2">건축물 종류</th><th>지방세정 시가표준액</th></tr>
<tr><td rowspan="2">주택</td><td>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td>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tr>
<tr><td>단독주택</td><td>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tr>
<tr><td colspan="2">주택 외</td><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tr>
</table></td></tr>
<tr><td>토지</td><td>-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td></tr>
</table>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5 일반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구분	내용
대상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광명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 양육, 형제자매 부양)** ■ **순위별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분**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경우 아래 조건을 만족해야 1순위 신청 가능 - 세대주일 것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상 세대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규제지역 1순위 청약 불가) -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분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청약통장 자격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1순위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 인정 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2순위 : 예치금액과 관계없이 청약예금·청약부금·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분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구 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함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 선정 순서** - 1순위 가점제 : ①지역 → ②가점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추첨 - 1순위 추첨제 : ①지역 → ②무주택자 우선공급 → ③추첨

- 2순위 : ①지역 → ②추첨

■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경기도 광명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경기도 광명시 2년 미만 거주자 및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

■ **②가점**

- 전용면적별 1순위 가점제/추첨제 적용비율

구분	가점제	추첨제
전용면적 60㎡ 이하	40%	60%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70%	30%

- 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①무주택기간	32		만 30세 미만 미혼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②부양가족수 (청약신청자 본인 제외)	35		0명	5	4명	25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본인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배우자	**배우자 없음 또는 배우자 통장미가입**	**0**	**1년 이상 ~ 2년 미만**	**2**
			1년 미만	**1**	**2년 이상**	**3**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2024.03.25.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의2 나목에 따라 가점제 청약 시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에 배우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의 통장가입기간 점수표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50% 적용)	점수
1년 미만	6개월 미만	1점
1년 이상 ~ 2년 미만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점
2년 이상	1년 이상	3점

-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는 전체 가입기간의 50%에 해당하는 기간의 점수로 계산하며, 그 점수가 3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3점까지만 인정
- 본인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와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 합산 시 17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17점까지만 인정
- 청약 전 반드시 배우자 본인이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를 발급하여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확인해야 하며, 향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시 배우자의 순위확인서 및 배우자의 당첨사실 확인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하여 적격함을 증빙해야 함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홈 >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명 선택

 * 당첨사실 확인서 발급 : 청약홈 >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배우자의 청약통장이 가입되어 있으나, 순위확인서 발급 전 배우자의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순위확인서 발급이 불가하므로 적격증빙을 위하여 당첨자 발표 이후 계약 전까지 배우자의 청약통장 유지 필요

- 가점제 적용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1)

구 분	내 용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2)「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9호 각 목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소형·저가주택)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름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등의 경우 :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 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만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신고한 경우에는「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함.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 4) 확인방법: (1)주민등록표등본(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2)가족관계증명서, (3)혼인관계증명서(만 30세 이전에 혼인신고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4)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을 의미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부양'**의 의미는 같은 주민등록지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것**을 의미함 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 외국인 직계존속 -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 2019.11.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3)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손자녀 포함)는 미혼으로 한정 - 주택공급신청자의 만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 - 재혼배우자의 자녀는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 4)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외국인인 직계비속과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 (만 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만 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5) 확인방법: (1)주민등록표등·초본, (2)가족관계증명서, (3)만 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 - 만 18세 이상 ~ 만 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만 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주택 소유 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름

■ **②무주택자 우선공급** : 1순위 추첨제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다음 단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단계	비율	내용
1단계	추첨제 물량의 75%	무주택세대구성원
2단계	1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
3단계	2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1순위에 해당하는 분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가입기간은 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함

-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함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비고

■ **1순위 가점제 청약 시 유의사항**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분 및 그 세대원은 가점제 청약이 불가하며,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 시 부적격 처리됩니다.
- 1순위 가점제 당첨 시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어,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당첨자발표일로부터 2년간 다른 민영주택의 1순위 가점제 청약이 불가합니다.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경우 1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1순위 가점제 청약이 불가합니다.
- 배우자 분리세대의 세대원을 직계존속으로 부양가족수에 포함하는 경우, 배우자는 해당 세대의 세대주여야 하며, 세대원도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6 청약신청 및 당첨자 발표 안내

■ **청약신청 일정**

구분	특별공급	일반공급1순위		일반공급2순위	당첨자발표
		해당지역	기타지역		
일정	2026.09.29.(화)	2026.09.30.(수)	2026.10.01.(목)	2026.10.02.(금)	2026.10.12.(월)
방법	(PC·모바일)청약홈(09:00~17:30) (현장접수) 사업주체견본주택	(PC·모바일)청약홈(09:00~17:30) (현장접수) 청약통장가입은행			(PC·모바일)청약홈
	사업주체견본주택: 경기도 광명시 일직동 511-2「광명 시티프라디움 에듀하임」견본주택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광명 시티프라디움 에듀하임」견본주택 현장접수 (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 (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합니다. (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취소는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가능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 불가합니다.

※ 모바일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모바일 청약 시,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라며,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될 경우 본 아파트의 당첨을 취소합니다.(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청약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 한합니다.)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신청유형 및 주택명 선택 → 청약자격 등 입력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완료
- 청약신청 시간* : 09:00~17:30

* 17:30까지 청약신청 완료해야 하며, 청약 신청 진행 중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취소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청약취소 → 취소하고자 하는 신청내역 선택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취소 완료
- 청약신청 취소 가능시간 : 청약신청일 당일 09:00~17:30

*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청약신청 취소 완료해야 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현장접수, 정보취약계층에 한함)**

- 현장접수 시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접수를 받으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해야 합니다.
- **특별공급** : 특별공급 청약신청일 당일 10:00~14:00 사업주체 견본주택 방문을 통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일반공급** : 일반공급 청약신청일 당일 09:00~16:00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방문을 통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공급 현장접수 시 필요서류**

필요서류		
본인 신청 시	-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서류 (배우자 포함)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서류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해야 함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확인 방식**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해야 함

※ 주택공급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신청내용을 확인해야 하며,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해야 함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

■ **청약홈에서는 청약자의 편의를 위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이데이터 ('청약도움e') 서비스	- 청약신청 단계에서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등 행정정보를 수신하여 세대주 여부 및 해당지역 거주기간 등 청약신청 자격요건을 확인하여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 서비스 이용은 선택사항이며,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및 연계 기관(정보 보유기관)의 상황 등에 따라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용방법** : 청약신청 → APT → 청약홈 마이데이터('청약도움e') 서비스 팝업 →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공고단지 청약연습	-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날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가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 세대원 등록방법 : 청약자격확인 → 세대구성원 등록/조회 및 세대구성원 동의 - **이용방법** : 공고단지 청약연습 → 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당첨자발표 서비스	**청약홈**	- **조회방법**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당첨조회 - **조회기간 : 2026.10.12.(월) ~ 2026.10.21.(수) (10일간)** - 조회기간(10일)이 경과하더라도 ①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또는 ②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 - 당첨 결과는 착오 안내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선 및 서면 등 별도 통지하지 않습니다.
	문자	- **제공일시 : 2026.10.12.(월)**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제공대상** : 청약 신청 시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고 SMS 수신에 동의한 당첨(예비)자

		*** 당첨자 발표 안내 문자에는 스미싱 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링크(URL)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의 링크(URL) 또는 전화번호는 절대 누르지 않는 등 유사한 스미싱 문자에 대해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통신 환경 등에 따라 문자가 정상적으로 수신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당첨여부는 반드시 청약홈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자격 확인 구비서류

■ 입주대상자 자격검증 서류 제출 일정 및 장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2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사업주체가 정한 기간에 신청자격별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견본주택에 방문하여 청약내역과 대조, 검증하여 적격 여부를 확인하셔야 하며, 기간 내 자격 확인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계약 진행이 불가합니다.
- 자격검증 서류제출 방문 및 계약체결 시 당사 홈페이지(https://광명시티프라디움.com)를 통해 '사전방문 예약제'로 진행될 예정이오니, 홈페이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의 견본주택 방문 시 당첨자 본인 외 동반 1인만 입장이 가능합니다.

구분		서류 제출 대상자	**서류 제출 일정**	서류 제출 장소
정당 당첨자	특별공급	당첨자 전원	**'26.10.14.(수)~'26.10.19.(월) 10:00~17:00**	•「광명 시티프라디움 에듀하임」 견본주택 - 경기도 광명시 일직동 511-2 - 구비서류 등 지참 방문
	일반공급			
예비 입주자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서류접수 대상은 별도 통보 예정	예비입주자 서류접수 일정/방식 등 은 별도 통보 예정	
	일반공급			

■ 당첨자 서류제출 공통 유의사항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정당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는 서류제출 기간 내에 관련 서류를 필히 제출해야 하며, 상기 서류제출 일정 이외에는 방문이 불가합니다. (단, 정당 당첨자의 경우 계약체결 시 자격검증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입주대상자 자격 확인절차로 계약진행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 이전 사전 서류제출기간(사전예약제 운영) 내에 아래 자격검증서류를 제출하시고 부적격 사항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예비입주자의 동호수 추첨 및 계약일정 등은 당사 분양 홈페이지(https://광명시티프라디움.com)에 공지될 예정입니다.
- 모든 제출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원본 서류만 인정함)
- 당첨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자격검증서류를 제출하고 부적격 사항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하기 바랍니다.(세대주, 해당지역 거주기간, 주택소유, 배우자 분리세대 등)
- 자격확인서류 제출 시 구비서류 중 필요서류가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접수가 불가하며, 확인하여야 할 사항이 표기되지 않은 서류의 경우도 접수가 불가합니다.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당첨자 제출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당첨에 따른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해야 하며, 제출서류로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소명자료 관련 추가서류 제출 요구 시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 소명자료 추가제출 관련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통보예정이며 미제출 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서류 미제출로 자격 확인이 안 될 경우 계약일에 계약체결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신청자 본인 이외(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에는 모두 대리 제출자로 간주하며, 대리 제출자는 위임장, 당첨자 본인의 인감증명서(본인 발급), 당첨자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을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등본상 세대구성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세대주 변경,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이전 등) 공고일 기준 세대구성원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및 주민등록초본,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서류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당첨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서류심사를 진행하고 적격 여부를 확인받아 계약체결을 진행하여도 이후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되며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됩니다.
- 입주대상자 자격검증서류 제출기간 내 제출이 어려운 당첨자의 경우 견본주택으로 통지 후 계약체결 전 자격검증서류 일체 및 계약체결 시 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계약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단, 계약체결 시 자격검증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입주대상자 자격검증절차로 계약진행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신청 내용과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른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할 때까지 계약서 발급이 되지 않으며, 미소명시에는 부적격자임을 확인하여야 최종 부적격 처리(청약 통장 부활)되며, 서류 미제출로 인해 미확인 시 계약 포기로 간주하여 부적격이 아닌 일반 당첨자로 분류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자격검증 서류제출 시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하신 서류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4조 및 제52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 6개월간,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접수일로부터 10년 동안 보관한 뒤에 해당 기간이 경과하고 나면 폐기합니다.

■ 입주대상자 자격검증서류 제출 및 유의사항

- 특별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자의 동·호와 미계약 동·호는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됩니다.
- 일반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자의 동·호와 미계약 동·호는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됩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본 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을 위한 추첨에도 참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 배정일(당첨일)이 공급 신청한 다른 주택의 당첨자발표일보다 빠를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다른 주택의 입주자 선정 내역은 무효처리됩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예비입주자 중에서 최초 동호수 배정 추첨에 참가하여 동호수를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공급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고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동·호수를 배정받은 예비입주자가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7일 이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동·호 예비입주자(특별공급 및 일반공급)로 선정된 자는 연락처 변경 시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당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하지 않을 경우 연락처 및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당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자격확인 공통 제출서류(특별공급 / 일반공급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 기준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서류 (기본서류)	○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2020.12.21.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 함께 구비해야 신분증으로 활용 가능) 등 • 외국국적동포(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모바일 신분증 불가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 본인 발급용(발급용도 : 당첨자격확인 및 공급계약 체결용 / 제출처: 광명 시티프라디움 에듀하임) ※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의 경우 발급용도 및 제출처 확인 후 발급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 신청 불가
	○		인감도장	본인	• 인감증명서상의 인장 대조 확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자는 본인 서명
	○		주민등록표등본 (전체포함)	본인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 포함"하여 발급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본인 및 세대원 등 모두)
	○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 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 포함"하여 발급

			(전체포함)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포함하여 "상세"로발급(배우자 및 자녀, 직계존속 등 주택공급신청자와의 관계) ※ 가족관계증명서 상 등재된 모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 포함하여 "상세"로발급 ※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신고일,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상세)	본인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90일 또는 연간 183일 초과 해외체류 여부 확인 ※ 기록대조일: 생년월일~모집공고일로 설정(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발급), 출입국 기록 출력 여부 "예"로설정 발급 ※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는 제외
		○	복무확인서	본인	•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 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해당지역 거주자 자격으로 청약한 경우(군복무 기간 명시)
		○	주민등록표등본 (전체포함)	배우자	•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추가 제출(상기 등본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본인 및 세대원등모두)
		○	가족관계증명 (상세)	배우자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 • 재혼가정에서 배우자의 전혼 자녀를 자녀 수에 포함한 경우(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 ※ 가족관계증명서 상 등재된 모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
		○	국내거소신고증또는 외국인등록증	배우자	• 배우자가 재외동포일 경우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 등록증 제출(주택 소유 여부 확인용)
해외근무자 (단신부임)	○		해외체류 증빙서류	본인	•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파견 및 출장명령서(직인날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재직증명서(직인날인) 해외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 현지관공서에서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관련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발급내역 등 ※ 해외에서 발급받은 서류의 경우 번역공증 첨부 필수 근로자가 아닌 경우 : ① 비자발급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①, ② 모두 반드시 제출) ※ 유학, 연수,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관련 증빙서류 불가능한 자 또한 인정 불가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상세)	배우자 및 세대원 전원	• 배우자 및 세대원이 해외 체류 여부 확인 ※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모집공고일로 설정(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발급), 출입국 기록 출력 여부 "예"로 설정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 (전체포함)	직계존속	•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 직계존속과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재 확인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 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하는기간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하여 발급
기관추천 특별공급	○		해당 기관장의 추천서	본인	• 해당 추천 기관장이 발행한 추천서 및 추천 명부로 접수 ※ 인터넷 청약(청약Home)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주민등록표초본 (전체포함)	직계존속	• 3세대 이상 세대구성 배점을 받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주민등록표등본상 본인과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주소변동내역 표시하여 발급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배우자	• 3세대 구성 시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포함된 경우•재혼가정에서 배우자의 전혼 자녀를 자녀 수에 포함한 경우(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직계비속	• 공급신청자의 친자녀가공급신청자 및 그 배우자에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미등재된경우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만 18세 직계비속을 미성년 자녀로 증명하고자 하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 성평등가족부의 「한부모가족 지원법」에따라 한부모가족으로 지정된지5년이 경과된 경우
		○	임신진단서 (출산의 경우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한 태아를 자녀 수에 포함 및 출산특례를 신청한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서류 제출(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 가능해야함)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임신진단서만 인정(담당의사명, 의료기관등록번호, 질병코드번호, 출산예정일, 의사면허번호 및 의료기관 연락처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확인각서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입양한 자녀를 자녀 수에 포함한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하여 전부 표기
		○	기존주택 처분 관련 서약서	본인	• 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청약을 신청한 경우•견본주택 비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제2항제4호에 따른 서약서(별지 제6호서식)
신혼부부 특별공급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주택공급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제출(배우자 분리세대 포함) ※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의 과거 자격변동사항이 전부 표기되어야 하며,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표기하여 발급
	○		소득증빙서류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본인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 서류 ※ [표1] 신혼부부·생애최초·신생아 특별공급 소득입증서류참조 ※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성년인 직계존·비속의 소득입증서류
		○	부동산소유현황 및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본인 및 세대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자산 입증 서류(배우자 분리세대 세대원 포함) ※ [표3] 신혼부부·생애최초·신생아 특별공급 자산 입증 서류 참조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 발급기관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현황 ※ 부동산 소유현황에 보유 부동산이 없는 경우 '전국통합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추가 제출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직계비속	• 만18세 이상 ~ 만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 ※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신고일, 주민등록번호 뒷자리포함 및 성명 등 전부표기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직계비속	• 혼인신고일 전 출산한 자녀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상 등재된 모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포함 및 성명 등 전부 표기
		○	주민등록표초본 (전체포함)	직계존속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하였음을 확인하여,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1년 이상의 주소변동 사항,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하여 발급
		○	임신진단서 (출산의 경우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한 태아를 자녀수포함 및 출산특례를 신청한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서류 제출(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함)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임신진단서만 인정(담당의사명, 의료기관등록번호, 질병코드번호, 출산예정일, 의사면허번호 및

					의료기관 연락처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확인각서		• 임신의 경우(양식 : 견본주택 비치)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하여 전부 표기
		○	기존주택 처분 관련 서약서	본인	• 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청약을 신청한 경우 • 견본주택 비치「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제2항제4호에 따른 서약서(별지 제6호서식)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출입국사실증명원	부양가족 산정한 직계존·비속	• 직계존·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아래의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 -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만 30세 미만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만 30세 이상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모집공고일로 설정(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발급), 출입국 기록 출력 여부 "예"로 설정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 (전체포함)	직계존속	•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를 확인(3년이상의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주소변동사항(3년 이상),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전체포함"으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상 등재된 모두의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및 성명 등 전부 표기하여 "상세"로 발급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 ※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3년간의 내역,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하여 발급 ※ 발급기간 : 2023.09.18.~ 2026.09.18.
		○	주민등록표초본 (전체포함)	직계비속	• 만 30세 이상 미혼의 직계비속을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한 사실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 변동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 만 18세 이상의 미혼인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 ※ 당첨자의 만 30세 이상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발급기간 : 2025.09.18.~ 2026.09.18.(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1년간의 내역)
		○	임신진단서 (출산의 경우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출산특례를 신청한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서류 제출(임신 증명서류는 모집공고일 현재 임신 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임신진단서만 인정(담당의사명, 의료기관등록번호, 질병코드번호, 출산예정일, 의사면허번호 및 의료기관 연락처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확인각서		• 임신의 경우(양식 : 견본주택 비치)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자녀 입양의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하여 전부 표기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배우자	•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을 신청한 경우
		○	기존주택 처분 관련 서약서	본인	• 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청약을 신청한 경우 • 견본주택 비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제2항제4호에 따른 서약서(별지 제6호서식)
생애최초 특별공급	○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본인	• 주택공급신청자의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의 통산하여 5개년도 이상의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 [표2]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세납부 입증 제출서류 참조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주택공급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배우자 분리세대 포함) ※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의 과거 자격변동사항이 전부 표기되어야 하며,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표기하여 발급
	○		소득증빙서류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본인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 [표1] 신혼부부·생애최초·신생아 특별공급 소득입증서류참조 ※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성년인 직계존·비속의 소득입증서류
		○	부동산소유현황 및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자산입증서류(배우자 분리세대 세대원 포함) ※ [표3] 신혼부부·생애최초·신생아 특별공급 자산입증서류 참조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 발급기관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소유현황 ※ 부동산소유현황에 보유 부동산이 없는 경우 '전국통합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추가 제출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직계비속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닌 청약신청자의 동일 등본상 등재된 만 18세 이상인 자녀를 '미혼인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 (전체포함)	직계존속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하였음을 확인하여,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1년 이상의 주소변동 사항,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하여 발급
		○	임신진단서 (출산의 경우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출산특례를 신청한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서류 제출(임신 증명서류는 모집공고일 현재 임신 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임신진단서만 인정(담당의사명, 의료기관등록번호, 질병코드번호, 출산예정일, 의사면허번호 및 의료기관 연락처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확인각서		• 임신의 경우(양식 : 견본주택 비치)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포함한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하여 전부 표기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신생아 특별공급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직계비속	• 신생아 특별공급인 경우 대상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상 등재된 모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주택공급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배우자 분리세대 포함)•※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의 과거 자격변동사항이 전부 표기되어야 하며,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표기하여 발급
			소득증빙서류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본인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 [표1] 신혼부부·생애최초·신생아 특별공급 소득 입증서류 참조 ※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성년인 직계존·비속의 소득입증서류
		○	부동산소유현황 및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자산입증서류(배우자 분리세대 세대원 포함) ※ [표3] 신혼부부·생애최초·신생아 특별공급 자산입증서류 참조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 발급기관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소유현황 ※ 부동산소유현황에 보유 부동산이 없는 경우 '전국통합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추가 제출
		○	주민등록표초본 (전체포함)	직계존속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하였음을 확인하여,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1년 이상의 주소변동 사항,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하여 발급
		○	임신진단서 (출산의 경우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한 태아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및 출산특례를 신청한 경우 •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임신진단서 외 불가] (임신진단서,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 제출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확인각서		• 임신의 경우(양식 : 견본주택 비치)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입양한 자녀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하여 전부 표기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배우자	• 청약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으로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 재혼한 배우자의 전혼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	기존주택 처분 관련 서약서	본인	• 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청약을 신청한 경우 • 견본주택 비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제2항제4호에 따른 서약서(별지 제6호서식)
일반공급 (가점제)		○	주민등록표초본 (전체포함)	직계존속	•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하여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및 성명 등 전부 표기(본인 및 세대원 등 모두)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등재되지 않은 경우(피부양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 포함) "상세"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 등재된 모두의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및 성명 등 전부 표기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 ※ 당첨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발급기간 : 2023.09.18.~ 2026.09.18.(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3년간의 내역)

		○	주민등록표초본 (전체포함)	직계비속	• 만 30세 이상의 미혼인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및 성명 등 전부 표기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 만 18세 이상의 미혼인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 ※ 당첨자의 만 30세 이상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발급기간 : 2025.09.18.~ 2026.09.18.(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1년간의 내역)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배우자	•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신청자 중 배우자의 청약통장가입기간 점수를 산입(1~3점)한 경우, 아래 경로를 통해 서류 발급 ※ 청약홈>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형 선택 ※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방문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발급
		○	당첨사실 확인서		•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신청자 중 배우자의 청약통장가입기간 점수를 산입(1~3점)한 경우, 아래 경로를 통해 서류 발급 ※ 청약홈>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
		○	출입국사실증명원	부양가족 산정한 직계존·비속	• 직계존·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아래의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 가점제당첨자는 필수 제출) -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만 30세 미만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만 30세 이상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모집공고일로 설정(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발급), 출입국 기록 출력 여부 "예"로 설정 발급
부적격 통보를 받은자		○	주택 및 분양권 등 소유여부 증명서류	해당주택	• 일반주택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 무허가주택 : 관할 지자체에서 발급한 무허가 건물임을 확인하는 공문 • 폐가, 멸실주택: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당첨사실 소명서류	해당자	• 해당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기타		○	그 외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서류	-	• 청약자의 자격요건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서류 일체
대리인 신청 시 (본인 외 모두 제3자로 간주)		○	위임장	청약자	• 견본주택 비치,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용도 : 아파트 서류접수 위임용)
		○	신분증	대리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견본주택에서는 상기 구비 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합니다.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세대 구성 사유, 현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현 세대원의 전입일 변동일 변동사유, 교부 대상자 외에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전체)
- 주민등록표초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전체 포함), 과거의 주소변동 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 상기 서류 외 당첨자격 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에서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미제출 시 자격 확인 불가로 계약체결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2020.12.21.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표1] 신혼부부·생애최초·신생아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 산정방식은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동일함)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① 재직증명서(출산휴가 및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출산휴가, 휴직기간을 명시하여 발급)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직인날인, '매월신고 납부대상자확인'으로 발급) 또는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 계속 휴직으로 월평균소득 산정이 어려운 경우 휴직 전 정상 재직기간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 ※ 출산휴가 기간 중 고용보험을 수령한 경우 출산전후휴가확인서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① 해당직장 ② 세무서, 해당직장
	금년도 신규취업자 또는 금년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 ② 금년도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 근로기간이 1개월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발급되지 않을 경우 전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하거나, 본인의 근로(연봉)계약서를 제출받아월평균소득을 추정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①, ② 해당직장
	전년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 ② 전년도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①, ② 해당직장
	직장가입자이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이 안되는 경우	① 재직증명서(사업자의 직인 날인 필수) ②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본)	① 해당직장 ② 세무서
자영업자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①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본) ② 사업자등록증명	①, ② 세무서
	신규사업자 등 소득입증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자	① 국민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공고일 이전 가입) 또는 공고일 이전 최근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부본) ② 사업자등록증명	① 국민연금공단 ② 세무서
	법인대표자	①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② 전년도 재무제표(원본) 및 원천징수이행명세서(직인날인) ③ 재직증명서(직인날인) ④ 사업자등록증명 및 법인등기사항증명서(원본)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①, ②, ③ 해당직장 ④ 세무서
프리랜서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①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 또는 간이지급명세서(직인날인) ② 위촉(해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①, ② 해당직장, 세무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공급신청자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이면 해당 세대 전체가 기준 소득 이하인 것으로 간주	① 행정복지센터

일용직 근로자	①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또는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② 위촉(해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직인날인) ※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및 위촉(해촉)증명서 ※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① 해당직장, 세무서 ② 해당직장
무직자	① 비사업자 확인각서(견본주택 비치) ②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서(소득사실 없음을 입증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 전년도 1월 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소득을 동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 소득을 산정하고 입증할 수 있는 서류제출	① 견본주택 비치 ② 세무서

※ 상기 소득 입증 관련 서류 외 대상자의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해당직장, 세무서 등 해당기관의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소득세 납부 입증관련 모든 서류는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표시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표2] 생애최초 특별공급 당첨자(예비입주자) 자격 및 소득세 납부 입증 서류

해당자격		소득입증제출서류	발급처
자격 입증 기본서류	근로자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① 해당직장 및 세무서 ② 건강보험공단
	자영업자	① 사업자등록증명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	① 납세증명서 및 납부내역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원본(직인날인) 또는 소득금액증명 원본 및 위촉(재직)증명서 ※ 과거 1년 이내 및 해당년도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분에 한함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5개년도 소득세 납부 입증 서류	근로자, 자영업자,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한 자	5개년도 소득세 납부증명서류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중 하나(5개년도 각각의 증빙서류 필요) ① 소득금액증명, 납세증명서 및 납부내역증명서(종합소득세 신고자에 한함) ②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③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④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①, ②, ③ 세무서 ④ 해당직장

※ 상기 소득 입증 관련 서류 외 대상자의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 중 결정세액이 환급 또는 없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제출(해당년도 모두)해야 합니다.

※ 해당직장, 세무서 등 해당기관의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소득증빙관련 모든 서류는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표시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표3] 신혼부부·생애최초·신생아 특별공급 당첨자(예비입주자) 자산입증 서류(추첨제 소득기준 초과 신청자에 한함)

해당자격	자산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부동산 소유	본인	① 부동산소유현황(세대원별 각각 발급) →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①,② 대법원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현황"이 있는 경우	및 세대원 전원	② 등기사항전부증명서(*부동산 소유 현황에 표시되니 해당 부동산 모두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 ③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전국단위 재산세 내역 발급) ④ 공동(개별)주택공시가격 확인원(*소유 부동산이 건축물대장상 주택인 경우) ⑤ 개별공시지가확인원(*소유 부동산이 토지이거나 단독·공동주택을 제외한 일반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인 경우) ⑥ 건축물시가표준액 조회결과(*단독·공동주택을 제외한 일반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인 경우) - 서울시 : 이택스 > "ETAX" 이용안내 > 조회/발급 > 주택외건물시가표준액조회에서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 서울시 외 : 위택스 > 지방세정보 > 시가표준액조회에서 건축물시가표준액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정부24 ③ 위택스(www.wetax.go.kr) ④,⑤ 행정복지센터 ⑥ 서울시 : 이택스(etax.seoul.go.kr), 서울시 외 : 위택스(www.wetax.go.kr)
	추가 (해당자)	농지법 및 초지법등에 따라 토지 가액에서 제외되는 경우 ① 농지대장 ② 축산업 허가증 ③ 토지이용계획확인서	① 행정복지센터 ② 지자체 축산과 ③ 토지이음(www.eum.go.kr)
"부동산 소유 현황"이 없는 경우	본인 및 세대원 전원	① 부동산소유현황 미성년자 포함(세대원 전원 각각 발급)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 조회 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 본인 및 청약자 공동/금융인증서 지참(※ 견본주택에서 청약자 및 세대원 전원 조회내역 확인) ② 미과세증명서 또는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전국자치단체 해당 부동산의 재산세 납부내역을 입증하는 서류) * 위택스> 발급 > 문서발급 안내 및 발급 > 지방세 과세증명서 ※ 부동산 소유에 의한 재산세가 과세되지 않았음을 증명 / 전국기준(주택, 토지 건축물),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출력	①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② 위택스(www.wetax.go.kr)

※ 신혼부부·생애최초·신생아 특별공급에서 추첨제로 청약하고 자산기준 충족을 입증해야 하는 주택공급신청자는 상기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견본주택에서는 상기 구비 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합니다.

■ 주택 소유 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검색대상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주택처분 기준일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 소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6.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 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7.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함)

9.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해당 목에서 정하는 주거전용면적 및 가격 요건을 갖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가.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나목3)에 해당하지 않는 것 :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6천만원) 이하일 것

나. 다음의 주택 또는 분양권 등 :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3억원(수도권은 5억원) 이하일 것

1) 「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 등

2)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3)에 해당하지 않는 것

3)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 등

조항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유형	주거전용면적	수도권	비수도권
제53조 제9호 가목	아파트 (도시형 생활주택 제외)	60㎡ 이하	1억 6천만원	1억원
제53조 제9호 나목	단독주택	85㎡ 이하	5억원	3억원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11.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가목2)를 준용함)

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12.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 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날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 전매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주택법」 제64조 및 「주택법 시행령」 제73조)

- 본 아파트의 전매제한은 최초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적용되며 전매제한기간은 최초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3년입니다. (단,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때까지)
- 분양권 전매는 계약자가 사업주체에 대한 채무를 모두 이행한 경우 한하며, 분양권 양수인은 계약자의 본 공급계약 과정에 체결한 약정에 대하여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합니다. 또한 전매로 인하여 발생될 수 있는 민형사상, 세무상 기타 제반 법적 문제에 대하여 계약자 및 분양권 양수인의 책임입니다.(전매는 정부의 부동산대책 및 관계법령의 제·개정에 의해 제한받을 수 있음)
- 계약자는 분양권 전매 전까지 채무 관계(미납대금, 연체료 등)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며, 해당 목적물에 가압류, 압류, 추심명령 등 제한채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이를 해제 또는 소멸시켜야 분양권 전매가 가능합니다.
- 전매자 간 작성(합의)한 부동산 매매계약서 상 분양권 전매 금액이 최초 체결한 분양계약 상의 분양대금과 상이하더라도, 이는 당사와 무관하며 양도인 및 양수인이 책임집니다.
- 분양권 전매 거래시에 인지세가 추가로 발생하며, 이는 전매자 상호 간에 합의 하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알선한 중도금 대출 취급기관으로부터 위 표시 부동산을 대상으로 대출받은 자는 전매 시 해당 대출취급기관이 발행한 전매 당사자 간의 대출승계 증거서류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러지 아니할 경우에는 대출금을 상환한 후 상환영수증을 즉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불법청약 등 최초 계약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당 분양계약이 취소되더라도 분양권 매수자는 이에 따른 피해를 보호받을 수 없으며, 이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 또는 분양권 양수인이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개인이나 법인일 경우에 계약을 하거나 권리 의무를 승계하는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규에 따른 신고 등 제한사항이 있을 수 있으며, 이를 해태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한 경우, 위반자는 위반한 행위 적발일로부터 10년간 입주자 자격을 제한합니다.

8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계약 체결

■ **계약 체결 일정 및 장소**

- 당첨자는 당첨 동·호수의 공급대금 확인 후 지정된 분양대금계좌(계약금)로 계약금 납부하고 필수 구비사항과 해당 추가 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모든 당첨자는 계약 전에 당첨 자격 서류 검수를 완료하셔야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구 분	계약 기간	계약 장소	문의 전화
정당 당첨자 계약 체결	26.10.24.(토)~26.10.26.(월) (10:00~16:00)	「광명 시티프라디움 에듀하임」 견본주택 (경기도 광명시 일직동 511-2)	1899-6851
예비입주자	추후 별도 안내 예정		

※ 공급계약 체결 방법 및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일정 및 변경사항 등에 대한 공지사항은 추후 당사 분양 홈페이지(https://광명시티프라디움.com)를 통해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사업주체가 통보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계약체결 이후라도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계약은 취소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정당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금은 지정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야 합니다.(현금 및 수표 수납 불가)

※ 주택의 공급계약이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5일이 지난 후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던 것을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체결하도록 합니다.

※ 순위 내 청약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후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 포함)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공급하고 잔여세대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공급합니다.

※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에서 책임지지 않으며,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반될 시 공급계약은 무효로 하고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합니다.

■ **계약 체결 시 구비서류**

구 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 기준	확인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본인 계약 시	○		계약금 입금 증빙서류	본인	• 무통장 입금 영수증 또는 입금확인증 ※ 현장수납 불가
	○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2020.12.21.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 함께 구비해야 신분증으로 활용 가능) 등 • 외국국적동포(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모바일 신분증 불가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 본인발급용(발급용도 : 당첨자격확인 및 공급계약 체결용 / 제출처 : 광명 시티프라디움 에듀하임) ※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의 경우 발급용도 및 제출처 확인 후 발급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 신청 불가
	○		인감도장	본인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생략
		○	당첨 유형별 입주대상자 자격검증서류	해당자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	해당자	• 주택 및 분양권 등 소유여부 증명서류 - 일반주택 :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무허가 주택 : 관할 지자체에서 발급한 무허가 건물임을 확인하는 공문 • 해당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증빙자료 포함)	본인	• 아파트 공급대금, 발코니확장 공사비를 합산한 금액이 주택취득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의 합계액이 일치해야 함
	○		대한민국 정부수입인지	본인	•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발급 후 사본 제출 (사업주체 및 계약자 분담) • 수입인지 세액 1) 아파트 공급계약 인지세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해당) : 1억원초과 ~ 10억원이하 시 15만원, 10억원 초과 시 35만원, (사업주체 및 계약자 분담(1/2)) ※발코니 확장계약서 및 추가선택품목

					계약서는 동일 계약당사자가 작성한 공급계약서와 하나의 계약내용을 이루는 보완문서로서, 「인지세법」 제5조(보완문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기재금액 변경 시의 세액 계산)에 따라 계약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인지세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 : 우체국·은행(해당 기관 영업시간에 방문하여 구입) - 온라인 : 전자수입인지(www.e-revenuestamp.or.kr) 사이트에서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구입 후 출력
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 사항	○		위임장	-	• [견본주택에 비치] ※ 계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청약자	•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발급용도 : 당첨자격확인 및 공급계약 체결용 / 제출처 : 광명 시티프라디움 에듀하임)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함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대리신청 불가
	○		신분증, 인장	대리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상기 제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인은 공급 신청 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주택의 공급계약이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5일이 지난 후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던 것을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체결하도록 함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에 견본주택으로 제출함을 원칙으로 계약 시 구비서류를 사전에 제출하시고 부적격사항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세대주, 해당 거주기간, 주택소유, 배우자 분리세대 등 확인)

※ 아파트 공급계약서(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 소유권이전 등기 신청 시 제출하는 계약서) 및 발코니확장, 추가선택품목계약서에 대한 인지세는 사업주체와 계약자가 균등 분할 납부한다. (발코니 확장계약서 및 추가선택품목 계약서는 동일 계약당사자가 작성한 공급계약서와 하나의 계약내용을 이루는 보완문서로서, 「인지세법」 제5조(보완문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기재금액 변경 시의 세액 계산)에 따라 계약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인지세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공급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전매) 계약서는「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인지세법시행규칙」 제3조에 규정에 의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대상이므로 당해 계약서별로 계약 당사자 간에 서명날인을 마친 때(전매포함 분양계약 체결 시)에 과세 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과세기준(기재금액)은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동산거래 계약서에 기재된 실제 거래가격(분양대금과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입니다.

* 구입처 - 오프라인 : 우체국, 은행(해당 기관 영업시간에 방문하여 구입) / 온라인 : 전자수입인지(https://www.e-revenuestamp.or.kr)_전자수입인지 구입 후 출력

※ 인지세 납부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자료실(인지세 자주 묻는 상담사례)에서 확인하시거나 세무서(소비 담당)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거주지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는 서류만 인정합니다.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체결 조건 및 유의사항

구분	내용
입주대상자 자격확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의거 당첨자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주택소유현황, 청약제한사항 등을 전산검색하며,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등으로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확인합니다. 따라서, 입주대상자 자격확인 서류를 미제출 또는 제출하였으나 확인 필요사항 누락, 생략 등 자격확인이 불분명한 경우 계약체결이 불가합니다. • 부적격 통보 및 소명 안내 :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한국부동산원)의 전산검색 결과 주택소유 또는 청약제한사항 등이 있는 경우(관련기관의 전산시스템과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입주대상자의 현황이 상이할 수 있음) 및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확인결과 부적격 사항 및 적격 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사업주체는 유선 또는 대면, 서면의 방법으로 입주대상자에게 부적격 통보하며, 그 통보일로부터 7일의 소명기간 내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계약체결한 경우 계약을 취소하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에 의거 부적격당첨자의 청약제한사항이 적용됩니다. •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 기재가 사실임을 증명하는 경우 견본주택에 방문하여 '당첨사실 삭제 요청서' 작성 시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본 아파트의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 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민간 사전당첨자를 포함)로 선정을 제한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 제4항에 의거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첨자로 봅니다. 다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7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같은 순위(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순위)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2.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52조 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예비입주자의 신청 가점점수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재산정한 가점점수가 다음 순위의 예비입주자의 점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인정되며, 다음 순위의 예비입주자 동점이거나 더 낮은 경우에는 예비입주자 선정이 취소되며, 동·호수 배정 참여시 부적격 처리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7조 제7항에 의거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부적격 처리합니다. 1.「주택법」제65조(공급질서 교란 금지)에 따른 입주자 자격제한 기간 중에 있는 경우 2.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제1순위로 공급신청할 수 없는 자가 제1순위로 공급신청하여 당첨된 경우 2의2. 제28조 제6항에 따라 가점제의 적용 대상자가 아닌 자가 가점제를 적용 받아 당첨된 경우 3. 제35조에서 제4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주택특별공급을 받은 자가 다른 주택을 한 번 이상 특별공급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특례 제외) 4. 제54조 제1항 각 호의 주택에 당첨된 자가 제2항에 따른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의 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5. 제58조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부적격 당첨자가 당첨일부터 1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다)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이중 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의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 이중당첨자, 본인 중복신청/당첨자, 부적격 재당첨자 처리 기준 1.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처리 합니다. [단, 본인이 동일주택에 대하여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 주택에 특별공급 중복청약은 불가합니다)] ※ 2024.03.25.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의2에 따라 부부간 특별공급 및 재당첨제한 적용 주택에 대한 중복청약이 가능합니다. • 부적격 당첨자의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1. 청약 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여부가 청약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 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등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 또는 분양일정상 계약한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취소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취소 세대는 당첨유형별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또한, 불법행위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2. 관계기관의 전산검색결과 수신현황 및 입주대상자의 자격확인절차 등 분양일정 상 계약완료 이후 일정시점(중도금 1회차 납부 전)까지는 사업주체의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자체점검, 재검수 등으로 인하여 부적격사항 확인 시 당첨 취소 및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3. 또한,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의 현장점검으로 불법전매, 부정청약, 위장전입 등 불법행위 적발 시 계약완료 상당시간 이후(입주 전까지)라도 당첨 취소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적격 당첨자의 명단관리 등	• 사업주체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2조 제3항 및 제57조 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58조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한국부동산원)에 통보합니다. ※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한국부동산원)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제57조 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58조 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합니다. • 부적격 당첨자는 계약기간 중 계약장소에 방문하여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 기재가 사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사업주체에 제출하고 '당첨사실 삭제 및 계좌 부활 요청서'(견본주택 비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만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부적격 당첨자 명단 통보가 가능함

	• 예비입주자 선정 시 제출한 청약신청 서류 검토 결과, 가점점수가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재산정한 가점점수가 다음 순위 예비입주자의 점수를 초과한 경우에만 예비입주자 자격이 유지될 수 있으며, 다음 순번 예비입주자 점수보다 같거나 낮은 경우에는 예비입주자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본 아파트는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 변조,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관련 법령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되,「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6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임시사용승인(동별사용검사 포함)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금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납부하고,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 절차 등의 이유로 실 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합니다.
• 본 표시 재산의 구조물 등 제반 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한 이의 제기 및 그 밖의 인쇄물이나 구두약정의 내용은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 견본주택에서 발생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업체, 부동산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한 사항입니다.
• 기타 계약조건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9조에 준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급계약서의 내용에 따릅니다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분		금융기관	납부계좌	예금주
분양대금	계약금, 중도금, 잔금	농협은행	301-0390-7559-31	코리아신탁(주)

※ 상기 분양대금 계약금 납부계좌는 발코니확장 및 추가선택품목 납부계좌와 상이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계좌는 지정된 상기 계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세대별 분양대금 납부계좌는 계약체결 시 세대별 공급계약서에 명기하여 고지할 예정입니다.(타은행 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 가능합니다.)
※ 지정된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에 상기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체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온라인 수납만을 인정하며, 견본주택에서 일체의 현금 및 수표 수납은 하지 않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타인 명의 등 계약금 납부 주체가 당첨자와 상이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에는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제반 문제에 대하여 사업주체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본 공급계약과 관련된 분양대금은 반드시 상기에 명시된 계좌에 입금하여야 하고, 그 외 방법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분양대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선납 시 주택도시보증공사 분양보증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 무통장 입금 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예시 : 101동 101호 홍길동의 경우, 1010101홍길동 기재, 문자수 제한이 있을 경우 동·호수를 우선 기재하고 기재 가능한 문자까지 최대한 기재)
※ 무통장 입금자 중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일정 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합니다.
※ 사업주체의 PF대출금이 전액 상환될 경우 자금관리자인 코리아신탁(주)와의 자금관리 대리사무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기 수납계좌가 변경될 수 있고, 수분양자는 이에 대하여 분명히 인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계약자 중도금 대출 안내

• 본 아파트의 중도금 대출은 이자 후불제이며, 전체 분양대금의 40% 범위 내에서 중도금 대출기관을 알선할 예정입니다.(단, 정부 정책 및 금융권 사정 등의 사유로 다소 변경할 수 있음)
• 사업주체에서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 신청이 가능하나, 관련 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및 자격 가능 여부 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대출 관련 세부내용은 지정된 금융기관에 직접 문의하셔야 하며, 이 경우 계약자는 사업주체 및 시공자에게 책임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대출 불가 사유로 공급계약 해제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 또는 대출기관의 규제 등에 따라 사업주체의 중도금 대출 알선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은 계약자 본인 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해야 합니다.(중도금 대출취급기관의 알선은 사업주체 및 시공자의 의무사항이 아니고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계약자에 대한 편의제공에 불과함)
- 수분양자가 중도금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계약금(분양대금의 10%) 완납 및 분양계약 체결 후 사업주체가 알선한 중도금 대출 취급기관과 별도로 계약 체결을 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 이자 납부는 적격 대출 시 중도금 대출 최초 실행일로부터 사업주체가 지정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의 대출이자에 대해서는 사업주체가 대납하되 계약자는 입주 시 사업주체에서 지정한 기일 내에 대납이자를 사업주체 측에 일시 납부하여야 입주 가능하며,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부터 발생하는 대출이자에 대해서는 계약자 본인이 해당 대출 취급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수분양자가 중도금 대출 신청 시 본인(법정 성년후견인 포함) 외에는 중도금 대출 신청이 불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중도금 대출조건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하여야 하며, 중도금 대출 미신청, 대출비율 축소, 대출 불가 시 계약자 본인 책임하에 정해진 납부일정에 맞춰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 시 공급계약서에 따라 연체료 발생 및 계약해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금융시장의 경색 또는 변동성으로 인하여 선정된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의 특유성(업종, 업태 등) 및 대출 형태에 따라 부득이 계약자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대출취급기관과의 중도금 대출협약 등에 의거하여 대출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결격사유 등이 발생할 경우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 중단 등 요구에 따라 계약해지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자는 입주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담보대출로 전환해야 하며, 대출금을 담보대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급금액을 전액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담보대출에 따른 제반 수수료 및 근저당설정 비용 등은 대출취급기관이 정한 부담 주체가 부담하여야 하며, 담보 전환 시 대출한도, 대출금리 등 기타대출조건 등은 대출취급기관의 조건에 따르기로 합니다.
- 계약자는 사업주체가 알선한 금융기관에서 중도금을 대출받았을 경우 준공 후 소유권 이전등기 및 대출은행의 1순위(제2금융권에서 추가대출을 받은 경우 제2금융기관의 2순위 포함) 근저당 설정 시까지 해당 부동산에 임대차 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 및 견본주택은 대출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담 시 대출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추후 금융기관 심사를 통하여 대출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에 고객의 대출비율 축소 또는 대출불가에 대하여 분양상담(전화 상담 포함) 내용을 근거로 사업주체 및 시공자에 대출 책임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건설지역인 경기도 광명시는 투기과열지구로 관계법령에 따라 개인의 주택소유, 대출유무, 분양권 소유여부 등에 따라 중도금 대출금액이 개인에 따라 상이하며, 개인별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비율이 축소되거나 대출 자체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 사업주체가 알선한 대출의 대출기간 만료 시(준공 후 미입주 등), 금융기관의 대출기간 연장 및 공정률에 따른 중도금 납입일자의 변경에 대해 별도의 절차 없이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한국주택금융공사 중도금 대출보증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세대당 1건으로 제한되었으며, 금융기관의 대출조건에 따라 일부 중도금 대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기타 유의사항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 규정에 의거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라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외국인이 국내 토지를 취득할 경우
- 국내 거주 외국인이 주거목적의 국내 주택 구입 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토지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8조에 의거 외국인 등이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 매매 제외)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관할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영리목적 법인의 국내 설립 후 토지 취득 시「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외국인투자 기업 등록을 마치고 토지취득신고를 한 후 국내 토지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 또한, 외국인 거소 요건 등에 따라 일부 외국인은 중도금 대출의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자 본인의 자금으로 중도금을 납부해야 하며, 이때 공급계약의 해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 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최종 주택건설사업승인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사업주체의 수락 하에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고, 또한, 사업승인변경 등 관련 법규에 대한 제반 서류는 요청

당사자가 징구하여 사업주체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인 관례에 따르며, 분양신청자는 계약서를 작성하시기 전에 견본주택에 비치된 입주자모집공고문과 계약서의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자금관리 대리사무 관련 유의사항

- 코리아신탁(주)(이하 "자금관리 대리사무사"라 한다)는 분양수입금 등의 자금관리를 담당하며, (수분양자의 중도해지에 의한 환불금 등) "매도인 겸 사업시행자"(사업주체)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자금관리대리사무사가 매도인(사업주체)과 체결한 대리사무계약의 조약에 따라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되는 경우, 자금관리대리사무사가 관리하는 분양수입금과 자금관리업무 모두 매도인(사업주체)에게 포괄승계되며 자금관리대리사무사의 업무는 종결, 면책됨을 확인합니다.
- 매도인 겸 사업시행자(사업주체)의 매수인에 대한 분양대금 총액을 "자금관리 대리사무사"에게 양도하고, 수분양자는 이를 위해 분양수입금을 "자금관리 대리사무사" 에게 납부하기로 합니다.
- "자금관리 대리사무사" 는 부족한 사업비의 조달에 관여하지 아니합니다.
- "수분양자"가 납부한 분양대금은 토지비, 공사비 등의 지급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수분양자"는"자금관리 대리사무사"가 본 사업의 자금관리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 반환 의무는 매도인 겸 사업시행자"(사업주체)가 부담함을 확인하며, 향후 분양대금 반환사유가 발생하여 본 사업의 자금관리계좌 잔액이 분양대금 반환액보다 적을 경우 그 부족분에 대한 자금조달 의무는"매도인 겸 사업시행자"(사업주체)의 책임으로 이행함을 확인합니다.
- 분양대금반환과 관련하여 매수인인 "수분양자"는"자금관리 대리사무사"에게 분양대금반환 등을 직접 청구할 수 없고, "매도인 겸 사업시행자"(사업주체)가 모든 책임을 지는 것에 동의합니다.

■ 입주자 사전방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제3항제27호 규정 및 「주택법」제48조의2 「주택법 시행규칙」제20조의2에 의거 도장공사·도배공사·가구공사·타일공사·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주지정 기간 시작일 45일 전까지 사전방문을 2일 이상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방문 예정일자는 별도 통보합니다.(입주자 사전방문 일정은 관련 법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주예정일 : 2029년 03월 예정(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합니다.)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 및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의 귀책사유와 관계없는 문화재 출토, 매립폐기물, 암반발견, 행정명령, 민원, 법원의 공사중지 결정, 정부 정책이나 관계 법령의 변경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 및 노동조합의 파업·태업, 전쟁, 전염병 발생, 사회재난 등과 같은 예기치 못한 사유로 인하여 사용승인이 지연될 경우에는 사업주체는 이를 계약자에게 통보키로 하며, 이 경우에는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 지급을 적용하지 않으며 입주지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자가 계약한 동・호수에 대하여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 및 관리비에 대하여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여부에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하며, 계약자의 납부불이행으로 사업주체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계약자가 이를 배상합니다. 단,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이전에 잔금을 완납한 경우, 계약자가 잔금을 완납한 날부터 제세공과금 및 관리비를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 계약자는 입주지정기간 이내에 잔여 중도금 및 잔금, 연체료를 완납하고,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제반서류 및 비용(중도금대출 상환 영수증 또는 중도금대출에서 담보대출로 대환되는 은행 확인 서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제반서류 및 비용, 선수관리비 납부영수증 등)을 사업주체에게 제출 또는 납부한 후에 입주증을 발급받아 입주하여야 합니다.
- 입주 시 단지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탁관리업체에서 선수관리비를 부과합니다.
- 사업주체와 시공사는 수분양자에 대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채권회수를 위하여 입주관리(분양대금, 보증부대출금 등 채무 미완제 시 입주 및 소유권등기의 거부, 채무변제의 독촉, 가압류 등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적절한 조치를 위한 통지 등을 말함)를 이행하며, 이와 관련하여 수분양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민원을 제기할 수 없으며, 또한 민·형사상의 어떠한 책임도 물을 수 없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 경비실, 관리사무소, MDF실, 경로당, 어린이집,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주민회의실, 주민공동시설, 작은도서관, 기계/전기실, 지하주차장 등

■ 하자의 범위 및 담보책임기간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한다.

9 발코니 확장

■ **발코니 확장금액 납부계좌**

구분		금융기관	납부계좌	예금주
발코니확장	계약금, 중도금, 잔금	농협은행	301-0390-7580-41	코리아신탁(주)

- 발코니 확장 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지정된 상기 계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타은행 계좌이체 및 무통장입금 가능)
- 견본주택 내에서 계약금의 현금 또는 수표납부, 신용카드 결제 납부는 불가합니다.
- 무통장입금 혹은 계좌이체 시 동·호수 7자리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여야 합니다.(예시: 103동 1102호 홍길동: 1031102홍길동)
- 상기 지정계좌로 계약금 입금 및 발코니 확장 계약서 작성이 완료되어야 발코니 확장에 대한 효력이 발생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의 잔금은 납부 지정일자에 입금바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됩니다.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상기 발코니 확장 대금납부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발코니 확장 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아파트 분양대금 계좌와 혼동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당사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 납부예정일의 변동(연기 등)이 있을 경우, 시공사는 계약자에게 문자, 우편물 등으로 통보하며 이는 고지된 것으로 간주합니다.(수신여부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비**

(단위 : 원, VAT 포함)

약식표기(타입)	발코니확장금액	대금납부 일정		
		계약금 10% (계약 시)	중도금 10% (2027.04.30.)	잔금 80% (입주지정일)
59A	28,710,000	2,871,000	2,871,000	22,968,000
59B	22,099,000	2,209,900	2,209,900	17,679,200
84A	23,210,000	2,321,000	2,321,000	18,568,000
84B	29,348,000	2,934,800	2,934,800	23,478,400
84C	27,500,000	2,750,000	2,750,000	22,000,000
84D	34,716,000	3,471,600	3,471,600	27,772,800
84E	23,309,000	2,330,900	2,330,900	18,647,200

■ 발코니 확장시 유의사항

- 발코니 확장 공사에는 외부샤시, 확장형 주방가구, 확장부위 마감공사 비용 등이 포함되며, 타입별 확장 부위는 견본주택, 카탈로그 등 안내자료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같은 주택형이라 하더라도, 발코니 입면 변화 및 창호 크기 및 위치 등의 차이로 서비스 면적과 채광 및 환기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등 이상의 다른 제품(타사제품 포함)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주택형별 확장위치 등 세부사항은 카탈로그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에는 수전, 드레인 및 선홈통이 설치되는 발코니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가 있으며, 수전 및 드레인, 선홈통의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인접 상·하층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인해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 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장 환기구 위치, 스프링클러 위치, 에어컨 매립배관 위치, 세대 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실내습도 등 생활 습관에 따라 발코니 섀시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 환기 등으로 예방하셔야 하며 이로 인한 하자보수 등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겨울철 실내 습도가 높고 환기가 부족한 경우 결로 및 곰팡이가 발생되기 쉬우며, 각 세대에 설치된 환기시설을 주기적으로 적극 활용하여 환기 시 결로 발생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 상기 발코니 확장 공사비에는 통합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 관청으로부터 통합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창호 사양 및 크기, 창호분할 규격 및 입면 디자인, 개폐방식, 개폐방향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확장하지 않은 발코니, 실외기실 등은 준 외부공간으로서 난방시공 및 단열재가 설치되지 않으므로, 내,외부 온도차에 의하여 결로 및 결빙에 의한 마감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보관된 물품은 훼손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시 확장부분의 외부 창호는 창호사양(제조사, 브랜드 및 창틀, 하드웨어, 유리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시 스프링클러 헤드, 환기 디퓨저, 냉매배관 등의 설치 수량 및 위치, 사양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미확장부분(예를 들어 안방발코니 창)은 단창으로 설치됩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 및 창호는 기능 및 미관 개선을 위하여 형태, 재질 및 사양이 실시공시 인·허가 협의 완료 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외벽은 발코니 확장 등으로 단열재 추가 설치시 구조체 및 인테리어, 가구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시공시 외관구성상 일부세대의 발코니에 장식물이 부착되거나 선홈통을 가리기 위한 벽체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범위는 세대별로 상이하며 자세한 가격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기 바랍니다.
- 기본형(비확장) 세대의 경우 발코니 천장에 덕트, 배관 등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시 조명기구, 감지기, 스위치, 스프링클러 헤드, 환기 디퓨저, 냉매배관 등의 설치 수량 및 위치, 사양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10 추가 선택품목

■ 추가 선택품목 납부계좌

구분		금융기관	납부계좌	예금주
추가 선택품목	계약금, 중도금, 잔금	농협은행	301-0390-7580-41	코리아신탁(주)

- 추가 선택품목 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지정된 상기 계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타은행 계좌이체 및 무통장입금 가능)
- 견본주택 내에서 계약금의 현금 또는 수표 납부, 신용카드 결제 납부는 불가합니다.
- 무통장입금 혹은 계좌이체 시 동·호수 7자리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여야 합니다.(예시: 103동 1102호 홍길동: 1031102홍길동)
- 상기 지정 계좌로 계약금 입금 및 추가 선택품목 계약서 작성이 완료되어야 추가 선택품목에 대한 효력이 발생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선택품목의 잔금은 납부 지정일자에 입금바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됩니다.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상기 추가 선택품목 대금납부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추가 선택품목 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아파트 분양대금 계좌와 혼동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당사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 납부 예정일의 변동(연기 등)이 있을 경우, 시공사는 계약자에게 문자, 우편물 등으로 통보하며 이는 고지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수신 여부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 유의사항

- 추가 선택품목은 아파트 공급대금(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품목으로서 구입의사가 있는 분양계약자는 공급계약 체결 이후 선택 계약하는 사항입니다.
- 아파트 공급계약과 별도로 판매 및 진행되며 계약일정, 계약내용, 납부방법, 납부계좌 등 세부사항은 견본주택에서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 시공 상의 문제로 일정시점 이후에는 추가 선택품목의 계약이 불가합니다. (단, 계약 체결 일정은 추후 통보함)
- 추가선택품목의 디자인, 제품사양, 설치 위치 등에 대해 교체 및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추가선택품목 관련 홍보물 및 이미지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방향 및 치수, 재질 및 색상은 실제와 다르게 보일 수 있으니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선택품목 선택시 기본으로 제공되는 품목 및 마감재 시공 분에 대한 금액은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 별도 마감재 미시공으로 인해 감소되는 공사비용과 추가 시공품목의 공사비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으로 추후 미설치에 따른 금액 환불을 사업주체에게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구청으로부터 취득세 부과대상이며, 이는 공급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 추가선택품목 사항들은 (경미한)설계변경 등의 절차를 통해 일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향후 사업주체에게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현관 중문

(단위 : 원, VAT포함)

구분	기본제공(무상)	추가선택(유상)	약식표기(타입)	공급금액(원)
현관 중문	미설치	3연동 중문	59B	1,500,000
			84A	1,530,000
			84B	1,530,000
			84E	1,550,000
	미설치	스윙 중문	59A	1,560,000
			84C	1,560,000
			84D	1,560,000

- 현관 중문 기본제공(무상) 선택 시 중문틀이 시공되지 않습니다.
- 현관 중문은 본 공사 시 제조사 및 규격, 하드웨어 사양, 색상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현관 중문 옵션 선택 시 현관 가구 및 가구 마감판의 크기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스윙 중문 선택 시 편개형 중문으로 시공됩니다.

2. 거실 아트월

(단위 : 원, VAT포함)

구분	기본제공(무상)	추가선택(유상)	약식표기(타입)	공급금액(원)
거실 아트월	포세린타일 600*600	대형 포세린타일 600*1,200	59A	480,000
			59B	470,000
			84A	490,000
			84B	490,000
			84C	490,000
			84D	490,000
			84E	550,000

3. 현관 팬트리

(단위 : 원, VAT포함)

구분	기본제공(무상)	추가선택(유상)	약식표기(타입)	공급금액(원)
현관 팬트리	미설치	포스트형 시스템선반 + 여닫이 도어 + 센서등	84A	1,490,000
			84B	1,490,000
			84C	1,060,000
			84D	1,150,000
			84E	1,260,000

- 현관 팬트리 기본제공(무상) 선택 시 현관 팬트리 내 시스템선반 및 도어는 설치되지 않으며, 현관창고 내부는 도배로 마감됩니다.
- 현관 팬트리 기본제공(무상) 선택 시 현관 팬트리 내 스위치등이 설치되며, 스위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드레스룸

(단위 : 원, VAT포함)

구분	기본제공(무상)	추가선택(유상)- 1안, 2안	약식표기(타입)	공급금액(원)
드레스룸	미설치	1안) 조명형 벽판넬 시스템가구 +천장형 제습기 +AL슬라이딩 도어	59A	6,470,000
			59B	6,180,000
			84A	7,300,000
			84B	7,300,000
			84C	7,330,000
			84D	7,650,000
			84E	6,260,000
	미설치	2안) 포스트형 시스템가구 +천장형 제습기 +AL슬라이딩 도어	59A	3,910,000
			59B	3,420,000
			84A	4,050,000
			84B	4,050,000
			84C	4,240,000
			84D	4,220,000
			84E	3,420,000

- 드레스룸 기본제공(무상) 선택 시 드레스룸 도어 및 가구는 설치되지 않으며, 도배로 마감됩니다.
- 드레스룸 추가선택(유상) 선택 시 유리조명 시스템 선반은 전원 연결로 인해 고정 설치되어 이동할 수 없습니다.
- 드레스룸 추가선택(유상) 선택 시 AL슬라이딩 도어는 본 공사 시 제조사 및 규격, 유리, 하드웨어 사양, 색상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드레스룸 추가선택(유상) 선택 시 디자인 시스템선반(조명형), 벽체 시트판넬의 하드웨어 사양, 색상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드레스룸 추가선택(유상) 선택 시 천장형 제습기가 설치됩니다.(코스텔/CCD-600B)
- 드레스룸 기본제공(무상) 선택 시 천장형 제습기에 대한 전기/배수 설비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드레스룸 추가선택(유상) 선택 시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스위치, 콘센트) 의 스펙, 위치, 수량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침실 붙박이장

(단위 : 원, VAT포함)

구분	기본제공(무상)	추가선택(유상)	약식표기(타입)	공급금액(원)
침실 붙박이장	미설치	침실 붙박이장	59A	830,000
			59B	900,000
			84A	970,000
			84B	970,000
			84C	970,000
			84D	970,000
			84E	770,000

- 평형 및 타입별로 붙박이장의 길이 및 규격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침실 붙박이장 추가선택(유상)선택 시 설치되는 가구의 규격, 상세, 하드웨어는 본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6. 주방가구

(단위 : 원, VAT포함)

구분	기본제공(무상)	추가선택(유상)	약식표기(타입)	공급금액(원)
주방가구	1. 기본형 주방가구 2. 벽:타일(300*600) / 상판: 인조대리석(MMA) 3. 수전: 기본수전 4. 기본 싱크볼 5. 기본 ACC 6. 일반 아일랜드/식탁등	1. 특화 주방가구 : 상부장 하부 간접조명 ,아일랜드 조명형 장식장 2. 벽/상판: 엔지니어드스톤 3. 수전: 디자인 수전 4. 사각 싱크볼 5. 미드웨이 디자인 ACC +고급형 수저분리함 6. 디자인 식탁/아일랜드등	59A	4,550,000
			84A	5,020,000
			84B	5,020,000
			84C	5,010,000
			84D	5,030,000
		1. 특화 주방가구 : 상부장 하부 간접조명 2. 벽/상판: 엔지니어드스톤 3. 수전: 디자인 수전 4. 사각 싱크볼 5. 미드웨이 디자인 ACC +고급형 수저분리함 6. 디자인 식탁/아일랜드등	84E	4,440,000
	1. 기본형 주방가구 2. 벽:타일(300*600) / 상판: 인조대리석(MMA) 3. 수전: 기본수전 4. 기본 싱크볼 5. 기본 ACC 6. 일반 아일랜드/식탁등	1. 특화 주방가구 : 상부장 하부 간접조명 ,아일랜드 조명형 장식장 2. 벽/상판: 엔지니어드스톤 3. 수전: 디자인 수전 4. 사각 싱크볼 5. 미드웨이 디자인 ACC +고급형 수저분리함 6. 디자인 식탁/아일랜드등 7. 복도 유리장식장	59B	5,870,000

- 주방 특화 옵션은 품목별 개별 선택이 불가합니다.
- 엔지니어드스톤은 재료의 물성에 따라 이음매가 발생할 수 있으며, 본공사 시 나누기 및 디자인 패턴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공사 시 아일랜드 콘센트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으며, 콘센트 본체 및 전선이 하부장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추가선택(유상) 선택 시 식탁/아일랜드등의 수량 및 위치는 타입별로 상이하며, 자세한 내용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부장 하부조명은 유지보수를 위해 상부에 점검구가 추가됩니다.
- 본공사 시 제조사 및 규격, 하드웨어 사양, 색상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7. 냉장고장

(단위 : 원, VAT포함)

구분	기본제공(무상)	추가선택(유상)- 1안, 2안	약식표기(타입)	공급금액(원)
냉장고장	미설치	1안) 와이드 냉장고장 +키큰장	59A	1,200,000
			59B	2,680,000
			84A	1,880,000
			84B	1,880,000
			84C	1,880,000
			84D	1,730,000
			84E	920,000
		2안) 냉장고 상부장 +김치냉장고 상부장	59A	1,030,000
			59B	1,670,000
			84A	900,000
			84B	900,000
			84C	900,000
			84D	900,000
			84E	920,000

- 1도어 3조합 냉장고 패키지 설치 시 배치 순서, 문열림 방향은 견본주택 기준으로 설치됩니다.
- 냉장고 제조사의 자재 수급에 따라 단종 등의 사유로 규격 변경 시 냉장고장 상세 사이즈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8. 조명

(단위 : 원, VAT포함)

구분	기본제공(무상)	추가선택(유상)	약식표기(타입)	공급금액(원)
거실/침실/욕실 조명	1. 기본 조명기구 2. 통합스위치 일반형	특화 조명기구(거실,침실,욕실) 1. 디밍 조명기구: 각방 디밍등, 거실 우물천장간접등 /주방 우물천장+간접등 2. 욕실장 하부 간접조명 3. 통합스위치 고급형	59A	1,410,000
			84A	1,410,000
			84B	1,410,000
			84C	1,410,000
			84D	1,410,000
		특화 조명기구(거실,침실,욕실) 1. 디밍 조명기구: 각방 디밍등, 거실 우물천장등 2. 욕실장 하부 간접조명 3. 통합스위치 고급형	59B	1,250,000
			84E	1,410,000

- 추가선택(유상) 선택 시 각방 디밍/색온도 조절기능 조명기구가 설치됩니다.
- 기본제공(무상) 선택 시 조명 ON/OFF 기능만 가능한 일반 통합스위치가 제공됩니다.

9.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단위 : 원, VAT포함)

약식표기(타입)	선택형	수량	위치	공급금액(원)
59A	1안	5대	거실,안방,침실1,2,알파룸	8,540,000
	2안	4대	거실,안방,침실1,2	7,280,000
	3안	2대	거실,안방	4,460,000
59B	1안	4대	거실,안방,침실1,2	7,380,000
	2안	2대	거실,안방	4,460,000
84A	1안	5대	거실,안방,침실1,2,알파룸	8,700,000
	2안	4대	거실,안방,침실1,2	7,900,000
	3안	2대	거실,안방	4,460,000
84B	1안	5대	거실,안방,침실1,2,알파룸	8,790,000
	2안	4대	거실,안방,침실1,2	7,970,000
	3안	2대	거실,안방	4,460,000
84C	1안	5대	거실,안방,침실1,2,알파룸	8,770,000
	2안	4대	거실,안방,침실1,2	7,900,000
	3안	2대	거실,안방	4,560,000
84D	1안	5대	거실,안방,침실1,2,알파룸	8,770,000
	2안	4대	거실,안방,침실1,2	7,900,000
	3안	2대	거실,안방	4,560,000
84E	1안	5대	거실,안방,침실1,2,알파룸	8,770,000
	2안	4대	거실,안방,침실1,2	7,880,000
	3안	2대	거실,안방	4,640,000

- 시스템에어컨 신청세대는 기본제공인 매립형 냉매배관(거실, 안방) 설치공사를 제외합니다.
-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설치되는 실외기에 스탠드형 및 벽걸이형 에어컨을 추가로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습니다.
- 상기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10. 알파룸

(단위 : 원, VAT포함)

구분	기본제공(무상)	추가선택(유상)	약식표기(타입)	공급금액(원)
알파룸	미설치 (안방+알파룸 통합)	안방/알파룸 분리	84E	1,430,000

- 옵션 선택에 따라 조명, 배선기구, 스위치 등의 위치 및 수량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옵션 선택에 따라 통합스위치(일반스위치 포함)의 기능 및 형태가 상이하며, 버튼 수량이 다를 수 있습니다.

11. 빌트인 가전

(단위 : 원, VAT포함)

구분	규격	제조사	모델명	공급금액(원)
복합환풍기	욕실복합환풍기(세대당 2개소)	하츠	HMF-G700	780,000
전기쿡탑	프리미엄 인덕션3구	삼성전자	NZ63B5056AK	1,000,000
복합오븐	광파오븐	삼성전자	NQ36A6555CK	380,000
냉장고	1안) 1도어 3조합	삼성전자	RR40C7995AP+ RZ34C7965AP+ RQ34C7945AP	4,190,000
	2안) 4도어냉장고+3도어김치	삼성전자	RM70F64Q1A+ RQ33DB74E1AP	4,640,000

- 복합환풍기 미선택 시 일반형 욕실배기팬이 설치됩니다.
- 전기쿡탑 옵션 미선택 시 일반 인덕션(인덕션2구+1구H/쿠첸/CIR-BB331TOB3) 이 설치됩니다.
- 복합오븐 미선택 시 가구 하부장으로 시공됩니다.
- 냉장고 1안 선택 시 냉장고장은 1안만, 냉장고 2안 선택 시 냉장고장은 2안만 선택 가능합니다.
- 10. 알파룸, 11. 빌트인 가전을 제외한 1~9 추가선택품목을 전체 선택할 경우 선택 품목 총액의 5%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11 단지 여건 등 유의사항

■ 친환경 주택의 성능수준 의무사항 적용여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1호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시합니다.

의무사항		적용여부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필요시)
건축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2항제1호)	단열조치 준수(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1호에 의한 단열조치를 준수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3호에 의한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 방법을 준수
	방습층 설치(다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4호에 의한 기밀 및 결로방지 등을 위한 조치를 준수
기계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2항제2호)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가목) (냉난방설비가 없는 경우 제외)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1호에 의한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2호에 의한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 준수
	고효율 가정용보일러(다목)	적용	가정용보일러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 제품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대상 제품별 인증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고효율 전동기(라목)	적용	전동기(단, 0.7kW 이하 전동기, 소방 및 제연송풍기용 전동기는 제외)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 또는 최저소비효율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
	고효율 난방, 급탕·급수펌프(마목)	적용	난방, 급탕 및 급수펌프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을 사용하거나 그 평균 효율이 KS 규격에서 정해진 기준 효율의 1.12배 이상의 제품을 사용
	절수형설비 설치(바목)	적용	세대 내에 설치되는 수전류는 「수도법」제15조 및「수도법시행규칙」 제1조의2, 별표2에 따른 절수형 설비로 설치
	실별 온도조절장치(사목)	적용	세대 내에는 각 실별난방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온도조절장치를 설치
전기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2항제3호)	수변전설비 설치(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1호에 의한 수변전설비를 설치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2호에 의한 간선 및 동력설비를 설치

	조명설치(다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3호에 의한 조명설비를 설치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라목)	적용	단지 내의 공용화장실에는 화장실의 사용여부에 따라 자동으로 점멸되는 스위치를 설치

■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및 공동주택 성능등급의 표시(「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 및 「주택법」 제39조)

녹색건축 예비인증서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예비인증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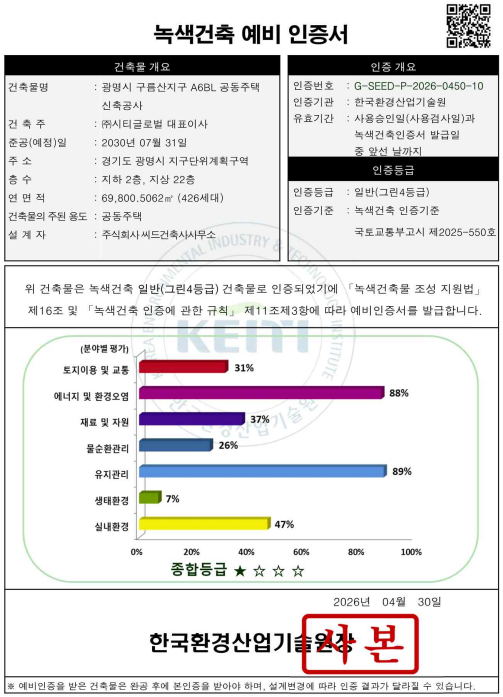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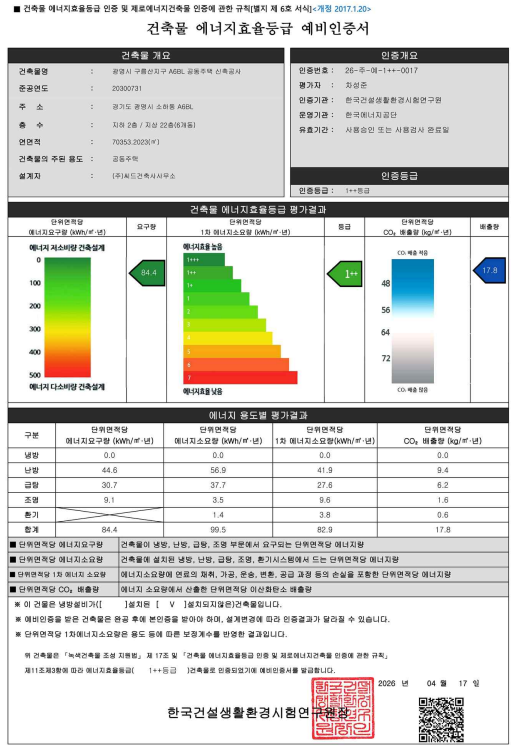

녹색건축 예비 인증서

건축물 개요	
건축물명	: 광명시 구름산지구 A6BL 공동주택 신축공사
건 축 주	: ㈜시티글로벌 대표이사
준공(예정)일	: 2030년 07월 31일
주 소	: 경기도 광명시 지구단위계획구역
층 수	: 지하 2층, 지상 22층
연 면 적	: 69,800.5062㎡ (426세대)
건축물의 주된 용도	: 공동주택
설 계 자	: 주식회사 씨드건축사사무소

인증 개요	
인증번호	: G-SEED-P-2026-0450-10
인증기관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유효기간	: 사용승인일(사용검사일)과 녹색건축인증서 발급일 중 앞선 날까지

인증등급	
인증등급	: 일반(그린4등급)
인증기준	: 녹색건축 인증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550호

위 건축물은 녹색건축 일반(그린4등급) 건축물로 인증되었기에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 및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예비인증서를 발급합니다.

2026년 04월 30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사본

※ 예비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완공 후에 본인증을 받아야 하며, 설계변경에 따라 인증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별지 제 6호 서식)<개정 2017.1.20>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

건축물 개요	
건축물명	: 광명시 구름산지구 A6BL 공동주택 신축공사
준공연도	: 20300731
주 소	: 경기도 광명시 소하동 A6BL
층 수	: 지하 2층 / 지상 22층(6개동)
연면적	: 70353.2023(㎡)
건축물의 주된 용도	: 공동주택
설계자	: (주)씨드건축사사무소

인증개요	
인증번호	: 26-주-예-1++-0017
평가자	: 차성준
인증기관	: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운영기관	: 한국에너지공단
유효기간	: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 완료일

인증등급
인증등급 : 1++등급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평가결과

단위면적당 에너지요구량 (kWh/㎡·년)	요구량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 (kWh/㎡·년)	등급	단위면적당 CO_2 배출량 (kg/㎡·년)	배출량
84.4		99.5	1++	17.8	

에너지 용도별 평가결과

구분	단위면적당 에너지요구량 (kWh/㎡·년)	단위면적당 에너지소요량 (kWh/㎡·년)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kWh/㎡·년)	단위면적당 CO_2 배출량 (kg/㎡·년)
냉방	0.0	0.0	0.0	0.0
난방	44.6	56.9	41.9	9.4
급탕	30.7	37.7	27.6	6.2
조명	9.1	3.5	9.6	1.6
환기		1.4	3.8	0.6
합계	84.4	99.5	82.9	17.8

■ 단위면적당 에너지요구량	건축물이 냉방, 난방, 급탕, 조명 부문에서 요구되는 단위면적당 에너지량
■ 단위면적당 에너지소요량	건축물에 설치된 냉방, 난방, 급탕, 조명, 환기시스템에서 드는 단위면적당 에너지량
■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 소요량	에너지소요량에 연료의 채취, 가공, 운송, 변환, 공급 과정 등의 손실을 포함한 단위면적당 에너지량
■ 단위면적당 CO_2 배출량	에너지 소요량에서 산출한 단위면적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 이 건물은 냉방설비가([ ]설치된 [V]설치되지않은)건축물입니다.
※ 예비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완공 후에 본인증을 받아야 하며, 설계변경에 따라 인증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은 용도 등에 따른 보정계수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위 건축물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 17조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에너지효율등급(1++등급)건축물로 인증되었기에 예비인증서를 발급합니다.

2026 년 04 월 17 일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장

■ 내진 성능등급 표시

구분	등급
내진능력	Ⅶ - 0.204g (MMI 등급)

• 본 아파트는 「건축법」 제48조제3항 및 제48조의3 제2항에 따른 내진성능 확보 여부와 내진능력 공개에 의거 메르칼리 진도등급을 기준으로 내진능력을 위와 같이 공개합니다.

■ 주차장 차로 및 출입구의 높이(「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3항 제29호의2)

구분	주차장 차로 높이	주차장 출입구의 높이
지하 1층	2.7M	2.7M
지하 2층	2.3M	2.3M

■ **학교시설 관련 유의사항**

- 본 아파트의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따라 유입되는 초등학교는 서면초등학교로 배정될 예정이며, 중학교는 소하중학군(안서중 등 5교 중 안서중 우선 배치예정), 고등학교는 관내 배치예정입니다. 단, 학생 배치계획 및 학교용지 신설 계획은 교육부의 학급당 학생 수 감축정책,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 학생 배치여건 변화(관내 공동주택 개발, 학생 수 변동) 등으로 변경(폐지)될 수 있으므로 관련사항은 관할 교육청인 광명 교육지원청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서면초등학교는 본 사업부지 경계면으로부터 남측 방향 통학거리 약 10m 지점에 위치하며, 사업부지 인접 도로를 횡단하여야 하므로 계약체결 전 현장을 직접 방문하시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통학로 등에 대한 여건 미확인으로 추후 사업주체 및 시공자, 관련 행정기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청약, 당첨, 입주, 관리 등**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르며, 공고 이외에 주택공급 신청자가 주택공급신청 시 알아야 할 사항은 팜플렛, 견본주택의 게시공고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및 계약 시 분양장소 주변의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부동산중개 등)는 사업주체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 신청접수는 특별공급 유형별, 일반공급 순위별로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며, 해당 신청일에 신청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청약 및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여건(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주위환경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을 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단지와 세대의 시설물 등에 대한 추가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타사 또는 당사 분양아파트의 마감사양, 설치 부대편의시설 및 조경과 본 주택을 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사업시행계획인가(사업계획승인)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아파트와 충분히 비교검토한 후에 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공급가격은 각 세대의 층별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층별 등 공급금액의 상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대지인접도로 또는 단지 내·외 도로와 단지 내 비상차로 등에 인접한 저층세대는 차량소음, 자동차 전조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계약세대가 속한 동, 층 및 향에 따라 입주 후 소음, 진동, 사생활권, 일조권 및 조망권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이 점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일부 세대는 단지 고저차로 인한 방음시설, 옹벽 등으로 인해 일조권 및 조망권 간섭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아파트 계약자의 경우 아파트 계약면적 외의 비주거부분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의 외관과 내부의 건축계획 및 용도변경은 아파트 계약자와 무관하게 설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주자가 시공자와 무관하게 개별적으로 실내인테리어업체 등을 통하여 시공(가변형 칸막이 제거 등)하는 경우, 스프링클러 헤드의 살수반경 기준,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및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등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며, 개별 시공한 부위에 발생한 하자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입주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마감재 오염 또는 훼손, 결로, 단열, 누수, 주변세대 피해 등)
- 계약 시 제시된 조감도, 세대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 이루어지는 각종 사업승인 또는 설계변경에 관한 제반 권리를 사업주체에게 위탁합니다.
- 주택법에 의거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사업주체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전화상담 및 분양홍보관 방문고객 청약상담 등은 청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상담내용에 대해 공고문 및 관련법령을 통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호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야간 경관조명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등에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를 확인하고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접수 및 계약체결 전 단지 및 현장여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안에 대하여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단지와 세대의 시설물 등에 대한 추가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당첨이후 주소, 연락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내용을 견본주택으로 서면 통보하시기 바라며 주소, 연락처를 변경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당첨자 및 계약자의 책임입니다.
- 인·허가 및 본 공사 시 외관개선을 위하여 건물외관(옥상, 옥탑, 동출입구, 문주, 창틀모양 및 색채, 난간의 디테일, 측벽문양, 입면, 환기용 캡 등)은 현장 시공 시 변경 및 추가될 수 있습니다.
-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물(인터넷, 신문광고 등)상의 마감재(규격, 재질, 디자인, 색상 등)와 모형도(단지조경 및 시설물 등의 컴퓨터그래픽(CG) 및 모형물 등)는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이며, 분양계약 내용 및 시공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단지배치 상 자전거 보관대, D/A(기계·전기실·발전기실 등의 급·배기구), 근린생활시설 및 부대시설의 공조기, 실외기 및 재활용 분리수거장과 인접한 세대는 소음, 냄새, 진동, 해충, 연기, 조망 등에 의한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위치 및 규모, 개소는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배치 특성 상 단지 내·외도로(단지주변 도시계획도로 및 지하주차장 출입구 포함)와 단지 내 비상차로 등에 인접한 세대에는 차량소음, 자동차 전조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각 동의 저층부 및 고층부 세대는 가로등, 보안등 및 야간조명, 주차장 진·출입 차량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세대 내 창호의 형태 및 위치는 견본주택을 기준으로 시공되나 제조자, 규격 및 사양(유리 및 손잡이 포함), 열림(개폐)방향, 형태가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주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본 주택은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노동조합의 파업, 태업 및 전염병 발생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입주지연보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본 공동주택(아파트)의 입주 후 불법 구조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본 주택의 명칭은 "광명 시티프라디움 에듀하임"으로 잠정 결정하였으나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 시 입주민의 이해를 돕기 위한 동호수의 표기 또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추후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주 시 입주자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공용부분(주거공용 제외) 및 복리시설 중 일부를 입주지정기간 시작일로부터 6개월간(필요에 따라 연장 가능) 입주 지원을 위한 업무시설로 사업주체가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용료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입주 후 입주자들의 편익 증진을 위해 공용부분(주거공용 제외) 및 복리시설 중 일부를 하자보수를 위한 업무시설 및 하자보수용 자재 보관 장소로 사업주체가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용료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세대 당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은 인·허가 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비, 소수점 이하 단수 정리에 따라 실제 등기 시 공급면적 및 대지면적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대지경계 및 면적은 실시계획 변경 등으로 최종 측량성과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준공 시 대지경계 및 지적확정에 따라 면적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하자담보 존속기간 및 하자보수

- 하자담보 존속기간은「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동법 시행령 제5조,「공동주택관리법」제36조 동법 시행령 36조에 의거하여 적용됩니다.
- 하자의 판정은 국토교통부 고시「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이 적용됩니다.
- 하자보수 절차는「공동주택관리법」제37조에 의거하여 적용됩니다.
- 하자판정은 사용검사(사용승인)도서를 기준으로 적용하며, 하자 등에 따른 피해보상은「민법」제667조에 따라 적용됩니다.

■ 위반사항 벌칙 등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 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주민등록법령 위반, 청약통장을 타인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분의 청약통장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신청 및 계약하는 등의 불법 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취소 및 고발조치하며,「주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 후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분양계약서에서 규정한 위약금을 공제합니다.
- 본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관련법령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부동산업자의 경우에도「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분양 홍보물 및 견본주택

- 카탈로그 및 모형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작한 것으로 추후 단지 및 기반시설 등의 경사도 및 레벨계획, 형태, 디자인, 시설 조경, 경계선형, 도로, 및 보도 선형 및 패턴 등은 추후 인허가 및 시공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은 59B, 84A, 84E 3개 타입이 시공되었으며, 미건립 타입은 모형과 인쇄물로 참고하시어 계약 전에 평면형태 및 가구배치, 실면적, 마감재 등 견본주택 설치 주택형과 다른 사항을 숙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내 건립세대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건립한 참고용 주택으로 당 현장 단위세대의 제공품목, 마감형태, 가구 디자인, 유상옵션 상품구성 등은 계약 전 반드시 관련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에 시공된 제품은 자재의 품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 동급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은 분양 후 일정기간 공개 후 당사 사정에 따라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을 촬영 후 보관할 예정입니다.
- 사이버 견본주택의 VR동영상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작된 가상공간이거나 견본주택을 촬영한 것으로 마감재 이외에 디스플레이를 위한 전시상품이 포함된 것이므로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건립타입은 동일타입이라도 견본주택과 달리 평면이 좌우 대칭될 수 있으니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견본주택 미건립 타입의 내부 치수 및 마감재의 사양은 견본주택 건립타입과 상이할 수 있으며, 추후에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분양홍보에 사용된 모형(단지모형)과 카탈로그 및 각종 인쇄물, 기타 홍보물에 삽입된 CG(광역 위치도, 조감도, 배치도, 투시도, 조경도, 주민공동시설, 단위세대 평면도 등)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위해 개략적으로 제작된 것이므로 실제 시공과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동선, 기능, 성능 개선 및 인허가 과정의 관계기관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식재 및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평가의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단지모형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마감재의 종류는 동등사양 내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E/V의 인승·속도·탑승위치 등)은 사업승인도서에 준하며, 이로 인해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창호(프레임, 유리, 손잡이, 도어록 등) 및 난간대는 견본주택 설치를 위해 생산된 제품으로 본 공사 시 제조사는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프레임 및 손잡이 등의 하드웨어와 도어록의 사양 및 디자인은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감지기, 환기구(급/배기용), 유도등, 스프링클러 헤드의 위치 및 개수는 본 공사와 무관하며, 실시공시 관계법령 및 설계도면 기준에 맞추어 설치됩니다.(본 공사 시 상기 사항 적용에 따른 일부 마감 사양, 우물천정, 커튼박스, PL창호, 주방기구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조명기구, 분전반, 통신단자함, 배선기구류, 월패드, 디지털도어락, 전열교환기 등은 제품의 성능, 디자인 및 기능개선을 위해 제품사양, 위치, 수량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분양 홍보에 사용된 모형 및 CG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해당 사업장을 우선하여 표현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존치 인접현황(종교시설, 공동주택, 도로 등)의 표현이 간소화 혹은 삭제되었음을 인지하시고 다소 실제와 상이할 수 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각종 홍보물 상의 평면도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분양 관련 팜플렛,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단지배치도, 이미지컷 등 각종 홍보물(분양 카탈로그) 및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형도(주변현황 및 기반시설은 이미지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실제와 다를 수 있고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이해를 돕기 위해 설치함) 상의 외부공간 식재, 시설물, 포장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사업계획변경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홍보물의 조감도 및 배치도 상의 주변 토지 및 건물 현황은 간략하게 표현된 것이므로, 청약 및 계약 전에 현장 답사 및 사전 확인을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및 분양홍보물은 확장형 기준으로 제작되어 기본형 세대 선택 시 제공되지 않는 품목이 있으므로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카탈로그 등에 기재된 마감재 수준 이상의 변경 요구는 불가하므로 마감재 수준을 자세히 확인하신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카탈로그 및 홈페이지에는 소비자의 주택형에 대한 인식의 편의를 위하여 간략하게 표기한 부분이 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동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 모집공고 이전 제작 및 배포된 홍보물 등은 사전 홍보 시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위해 제작된 것으로 현재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니 견본주택을 확인하시어 계약 시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각종 광고 및 홈페이지, 홍보물(카탈로그, 전단, 안내문 등) 등 홍보과정에서 현재 계획 또는 예정으로 홍보한 내용은 추후 인허가 과정이나 관계기관의 사정, 관련 정책 등의 변화로 변경될 수 있으며, 홍보물 제작 과정에서 오기, 오탈자로 인하여 잘못 기재될 수 있으니 견본주택에 방문하시어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하시길 바랍니다.
- 견본주택 내에는 분양가 포함 품목과 추가 선택품목, 전시품 등이 혼합되어 시공되었으며, 본공사 시에는 사업승인 도서 및 계약 내용에 따라 시공되어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고 전시품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 설계 및 단지 관련 주요사항

- 본 공고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합니다.
- 본 단지의 명칭, 동표시, 외부색채와 외관, 옥탑 디자인, 외부조명시설, 동출입구, 외부난간의 형태 및 높이, 단지 조경 등은 현장 여건 및 인허가 관청과의 협의 과정에서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 경관조명, 공용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 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아파트 옥탑 및 측벽에는 조형물 및 경관조명 등이 설치될 수 있어 최상층 세대의 조망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운영, 유지, 보수 등에 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야간 경관조명에 의해 고층 세대는 눈부심 및 수면장애 등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청약 및 계약 전 모형 등을 확인 후 진행하여야 합니다.

-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설치로 인해 이와 인접한 일부 세대는 소음 등 생활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쓰레기분리수거, 자전거보관소 위치 및 설치 규모는 공사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동주택의 난방은 지역난방으로 공급됩니다.
- 전기 및 통신 맨홀 등의 인입위치는 KEPCO(구 한국전력공사)와의 협의 후 변경될 수 있음.
- 가스계량기 및 세대 가스배관은 실내에 설치될 예정이며 원격검침 설치시, 검침 데이터를 도시가스사에 제공될 예정이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지하주차장은 일부 구간에서 교차로가 형성되며, 교차 부분에서는 보행자 동선과 차량 동선의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은 입주자 전체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차장으로 각 동별 세대별로 주차라인을 지정하여 주차할 수 없습니다.
- 지하주차장은 주차동선 및 지하층 환경개선을 위하여 적법한 절차에 의해 설계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저층부 마감은 층별, 위치별 시공 부위에 따라 석재 또는 뿜칠, 수성페인트로 시공되오니 청약 전 모형 또는 CG 등을 확인하시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등 단지 내 부대시설 사용에 대하여 각 동별 사용 시 계단실 등의 위치에 따라 거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배치 및 사용 편의성을 충분히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단지와 주변 도로 및 대지와의 레벨차가 생길 수 있으며 공사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인근에 접한 세대는 이를 충분히 인지한 후 청약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단지 주출입구, 부출입구,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의 단지 내 시설물 등에 의해 특정 세대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및 환경권 등이 침해될 수 있으며, 가로등, 경관조명 등 공용시설 조명과 상가조명에 의해 눈부심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의 대지는 공동주택과 공유하며, 근린생활시설의 외관 디자인, 색채, 마감, 내부 인테리어, 실별 구획 등은 사업주체의 의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동주택의 수분양자들은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근린생활시설 및 부대시설의 공조기, 에어컨 실외기 등의 시설이 근린생활시설 옥상에 계획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공동주택 세대의 조망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경비실, 주민공동시설은 별도의 실외기 외부 설치로 인해 미관이 저하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을 이용하는 차량 관련 출입구는 주출입구와 공유하여 사용하게 계획되어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입주자가 임의로 통제할 수 없습니다.
- 본 공사 시 근린생활시설의 위치 및 크기 형태 호실 개수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의 대지지분은 별도 산정되어 있으나, 아파트 부지와 경계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은 단지 여건에 따라 입면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의 기타공용면적(관리실, 경비실, 부대복리, 기계실, 전기실, 지하주차장 등) 면적배분은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산정되었으며, 추후 실시설계 및 인허가 진행 과정에서 전용 또는 기타공용부의 면적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외의 옹벽 및 경계 담장 등 구조물 시공구간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으며, 현장 여건에 따라 그 시설물의 재질 및 형태, 크기, 높이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주동 상부에 설치되는 태양광 패널의 개소, 위치, 스펙 등은 본공사 시 인허가 협의 등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태양광 패널 설치에 따른 인접 주동 세대의 빛반사, 눈부심 등 빛공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하절기 강우 등으로 인하여 고저차이로 인해 단지외부에서 빗물 등이 단지 내로 유입될 수 있으며, 이는 단지 내 특성으로 인한 것으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추후 옥외광고물 심의(자문) 및 야간경관심의(자문)에 따라 BI 위치 및 조명계획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차량 출입구를 제외한 단지 내 도로는 비상차로로 입주 후 단지운영에 따라 우편물 차량, 이삿짐, 택배, 구급차량 등이 단지 내 비상차량 동선을 통해 진입할 수 있으며, 일부 단지 내 도로는 경사에 따라 장애인의 통행에 불편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출입구 및 도로 등은 아파트와 근린생활시설이 함께 계획되어 있으며, 공동 사용하는 부분에 대한 점유 등의 권리행사는 일체 할 수 없고 별도의 대지구획은 불가합니다.
- 저층부 세대는 주변도로, 단지 내 비상차로, 근린생활시설 이용객, 문주, 부대복리시설, 가로등, 동출입구, 차량출입구 및 진출입 차량의 전조등에 의해 소음 및 조망 등 사생활 침해 및 야간 조명에 의한 눈부심 등의 환경권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와 인접한 세대는 엘리베이터 운행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동 하부 지하 1층 제연휀룸이 계획되어 주동에 인접하여 제연휀룸 급기DA가 설치되는 경우 일부 저층 세대에 소음 및 진동 등의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추후 실시공 시 휀룸의 기능상의 이유로 DA가 일부 추가 또는 이동될 수 있습니다.
- 각 동 1층에는 DA, 주차장 급배기그릴 등 저층부 세대 인접에 설치되어 소음, 진동, 냄새, 매연, 조망, 눈부심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조경식재, 야외시설, 저층부 외관, 동 현관, 지하 출입구, 건축 및 토목옹벽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조경식재, 야간조명 및 홈네트워킹 설비 등의 관리에 따른 유지, 보수,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 후 관리규약에 따릅니다.

- 단지 내 옹벽, 조경식재, 마운딩, 플랜터 등 구조물 구성에 따라 일부 저층세대에 사생활, 조망, 일조에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부대시설물(재활용 폐기물 보관소, 쓰레기 분리수거장, DA, 자전거 보관소, 탑라이트, 썬큰)등은 디자인 및 재질, 구조, 크기, 위치 등이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DA가 설치되는 인근 저층부 세대는 소음 및 진동 냄새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방범상 취약할 수 있으니 이를 충분히 인지한 후 청약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DA 위치는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부대시설(공용홀 포함)의 마감 및 시설의 경우 견본주택과 홍보자료는 참고용으로 제작된 것이며, 실제 설치되는 수량과 사양 및 기자재의 종류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임의로 변경 및 추가 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 필로티 상부층 세대는 필로티에 설치된 자전거보관대 등의 시설 이용과 외부 통행에 의한 소음 발생으로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으며, 필로티 위층의 바닥난방의 효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에 인접한 일부 세대는 시설 이용객들에 의하여 소음 및 먼지, 사생활의 침해를 받을 수 있으며, 우수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부 저층 세대의 경우 부대복리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용 에어컨실외기 등으로 인해 인접한 일부 세대의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소음피해,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설치되는 어린이놀이터, 주민공동시설 및 대지 내 공지, 소방도로, 보행가로변에 인접한 세대에는 사생활 침해 및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도로 및 보행로의 경사로, 선형, 폭, 조경 및 식재, 포장재, 포장패턴, 외부시설물은 본공사 시 동선, 기능, 성능개선을 위해 위치, 디자인, 높이, 구조, 재료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저층세대는 조망, 소음, 도로 여건으로 인한 시야간섭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공동주택용 재활용 분리수거장 6개소가 설치될 예정이며, 본공사 시 현장여건 및 미관, 사용성 개선, 외부 조경공간의 배치 개선 시 재활용 분리수거장의 위치, 크기, 디자인은 다소 조정될 수 있으며, 재활용 분리수거장과 인접한 일부 저층세대는 소음, 조망, 냄새 등의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각 재활용 분리수거장의 위치는 시공 여건에 따라 다소 상이할 수 있으며, 각 동출입구와 재활용 분리수거장의 거리는 각각 상이합니다.
- 아파트 옥상부에 의장용 구조물, 안테나, 피뢰침, 경관조명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사생활 침해 및 눈부심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안테나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이동통신설비 구축을 위해 옥탑에 설치되며 추후 이로 인한 사생활 침해 등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동별 옥상부에는 신재생에너지 설치기준에 준하여 태양광집광판 구조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빛반사 등에 의한 눈부심 및 풍음 등이 일부 세대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특성상 지하층에 전기실, 저수조 등 공용시설물이 위치하고 있으며, 전기실 및 발전기실 설치로 인해 인근 동은 발전기의 주기적 가동 및 비상가동으로 인한 소음 및 매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북서측 직선거리 13km 내 김포국제공항이 위치하여 항공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항공기 소음의 경우 항공기 운항 패턴이 불규칙하여 항공기 운항내용(종류, 운행횟수 등)에 따라 기준 소음도를 초과하여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종 필로티 내부 혹은 주출입구 인근에 자전거 보관소가 인접하게 설치되어 일부 저층세대 조망권 및 소음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본공사 시 현장 여건 및 미관, 사용성 개선을 위해 위치 및 규모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외부 시설물 가로등, 가로수 등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물이며 공동으로 관리비를 정산합니다.
- 커뮤니티 시설은 추후 별도로 운영될 예정이며, 입주 후 입주민들의 이해관계에 의한 사용상 불편함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 주동 지하주차장에서 주동으로 진입하는 자동문은 방화문이 아닌 일반자동문으로 설치되며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차대수는 대지형태, 주동배치에 따라 동별 차이가 발생 될 수 있으며, 주차대수는 전체세대에 대한 지하 및 지상에 배치된 주차대수의 평균 대수이므로, 각 동과 인접된 주차장이 주차대수보다 부족하다 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차대수는 공동주택 639대, 근린생활시설 5대, 총 644대(경형 및 장애인주차 포함)로 계획되어 있으며, 향후 인허가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은 지하1층~지하2층까지 2개 층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차량진입구의 주차 차단기 설치로 외부차량 진입 시 대기시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주행통로의 높이는 2.3M이며, 지하1층은 택배차량의 이동을 고려하여 메인 차량동선의 주행통로 높이는 2.7M로 계획하였으며, 지하주차장 이용 시 택배차량의 정·하차로 인해 일부 대기시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층별 각 주동의 접근 및 주차 진출입구, 램프위치, 부대시설 및 기계전기실 등 관련 공간계획으로 인해 각 주동별로 주차장 이용에 거리와 동선의 불편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
- 201동, 206동 사이로 지하주차장 주출입구가 계획되어 있어 인접한 저층세대의 소음, 냄새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와 눈부심 등의 빛공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은 주차공간의 일반주차 폭 2.5M, 확장주차 2.6M, 경형주차 폭 2.0M로 계획되어 있으나, 시공오차에 따라 폭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의 배수 트렌치는 일부구간에 물이 고일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은 밀폐된 공간으로 환기 부족 시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상부에는 각종 배선 및 배관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주차대수 확보를 위해 기둥간격이 일부 일정하지 않으므로 일부 주차면에는 기둥과 간섭되어 승하차시 불편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에는 기계실, 전기실 등 각종 기전시설 공간이 지하에 계획되어 있으며, 이와 인접한 세대는 소음 및 진동 발생으로 인한 생활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에는 일부 동 지하 인근 급기, 배기용 팬이 설치될 수 있으므로 주변으로 소음 및 열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개선 및 인허가 과정에서 관계기관 협의에 따라 본공사 시 용도, 규모, 구조, 동선, 주차면 위치, 디자인, 재료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동 색채 및 옥외시설물은 향후 상위 지침변경 및 인허가 과정 중 입주자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대지 주위의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사항은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결정되므로 도로 폭 등의 사항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의 주동이 위치한 대지의 레벨 및 형태는 본공사 시 주변레벨 및 단지 내 레벨 개선을 위해 도면과 상이하게 현장여건에 맞춰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거동 옥상은 관련 법규에 의한 인허가(건축심의) 권고에 따라 본 공사 시 그 형태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레벨과 주변 레벨에 따른 토목옹벽의 마감은 본공사 시 변경될 수 있으며, 분양홍보물(모형 및 CG)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단지는 인접도로현황에 따라 동별 도로소음 및 빛공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1층 및 저층부 세대는 단지 내 보도 등의 설치로 인해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으며, 별도의 방범창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현관, 발코니, 엘리베이터홀 등의 바닥 단차 및 레벨은 시공 과정상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별 현관 전면에 엘리베이터홀 설치로 사생활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지하층, 1층 로비의 형태 및 크기, 디자인, 층고, 천장고는 시공 시 현장여건에 따라 동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주동 엘리베이터 대수는 각 동마다 상이하며, 최종 사업계획승인 기준에 따라 시공될 예정으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동 입면 및 창호의 디자인 등은 관계법령에 따라 심의절차를 거쳐 결정된 바, 개인의 디자인 취향에 따른 변경이 불가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동 동출입구 주변으로 지상 DA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이는 지하시설과의 연계로 불가피한 사항으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201동, 206동 북측 주출입구 주변 도로가 위치하여 저층세대의 소음, 조망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 눈부심 등의 빛공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202동, 203동, 204동, 205동 사이 어린이놀이터가 계획되어 있어 저층세대의 소음, 조망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204동, 205동, 206동 사이에 어린이집 및 경로당이 계획되어 있어 저층세대의 소음, 조망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 주변으로 추진 중인 아파트 및 기타 시설 공사로 인한 소음 및 분진이 발생할 수 있으니, 사전에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체결 하시기 바라며, 이를 인지 및 확인하지 않은 데에 따른 불이익은 계약자가 감수하여야 함.
- 지하주차장에 고효율 조명기구가 설치될 예정이고, 지하주차장 상부에는 각종 배선, 배관, 휀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지하층 환기를 위한 휀이 설치되어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배치의 특성상 단지 내외 도로(지하주차장 램프 포함)등에 인접한 세대는 소음 및 자동차 전조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주 시 단지 바닥마감, 조경, 창호형태, 입면 장식몰딩 등으로 인하여 사다리차 이용 시 제약이 있을 수 있으며, 1층에서 E/V를 통한 이삿짐 운반을 할 수 있습니다.
- 단지 출입구 경비실 위치는 교통통제의 편리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이동하여 설치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는 대칭형으로도 시공되어 일부 거실, 안방, 침실, 주방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으니 계약 시 동호수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접세대(상하좌우) 및 동일세대 내부 각 부위별 발코니 확장 여부에 따라 추가 단열공사로 인하여 발코니 및 침실, 기타 일부구간의 벽체 및 천정의 일부가 돌출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해당부분의 커튼박스, 몰딩, 등박스, 걸레받이, 마감재, 가구류의 형태와 위치가 확장형 기준층 도면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상부층이 기본형, 하부층이 확장형일 경우, 상부층 발코니 바닥에 시공되어야 할 단열재로 인하여 상부층의 인테리어 및 단차 높이가 달라질 수 있으며, 동 조합, 실위치에 따라 벽체에도 단열재 시공이 될 수 있습니다.
- 하부층이 기본형, 상부층이 확장형일 경우, 하부층 발코니 천장에 시공되어야 할 단열재로 인하여 상부층의 인테리어 및 단차 높이가 달라질 수 있으며, 동 조합, 실위치에 따라 벽체에도 단열재 시공이 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의 욕실 단차는 바닥 구배시공으로 인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침실 내부로 물 넘김을 방지하기 위해 설계된 것으로 욕실출입 시 문짝에 의한 신발 걸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욕실/현관 등 단차 부위는 본공사 시 시공 오차가 있을 수 있으며, 출입 시 문짝에 의한 신발 걸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내부의 일반가구, 주방가구 및 내부 벽체마감 등은 인허가 과정 및 하자방지, 사용성 개선 등을 고려하여 인허가 도서 치수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내부 가구 설치부위의 비노출면은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①욕실장 및 욕실거울 후면에는 타일이 시공되지 않음. ②고정형 가구 상하부 및 후면에는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③주방가구와 접하는 후면 및 측면에는 타일이 시공되지 않음. ④주방가구 하부는 별도 마감재(강마루)가 시공되지 않음.

- 골조와 이질벽체(경량벽체 또는 조적벽 등)의 접합부에는 크랙하자 방지를 위하여 일부 마감면과 골조의 조정이 있을 수 있으며 마감재 디테일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의 우물천장 형태, 커튼박스 길이, 깊이 및 형태는 천장 내부의 설비 및 전기배관 등의 시설물 설치로 인하여 다소 축소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타일 및 엔지니어드스톤 등의 줄눈 위치는 주택형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본공사 시 하자 및 사용성 개선 등을 고려하여 시공위치 및 개소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세부 마감 디테일은 마감품질 확보를 위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일부세대는 공사 시행 중 고품질 시공을 위하여 선행세대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타입에 따라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식기세척기 등 가전 일체)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세대 내 설치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입주 시 세대 내 추가 실별 가구(장롱, 붙박이장 등) 및 가전설치 시 마감재별 두께차이로 인한 내부치수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필히 실측하신 후 설치하셔야 합니다.
- 세탁기 등이 설치되는 발코니 및 다용도실의 경우 발코니 확장유무와 관계없이 비난방 공간입니다.
- 물을 사용하지 않는 발코니는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필로티 상부(3층이상) 세대 내 소방 피난용 완강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본공사 시 설치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비확장 세대의 경우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타입, 배치 및 수치, 수전 등은 확장형 세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옵션에 따라 조명기구, 배선기구의 종류 및 설치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단위세대는 발코니에 피난용 하향식 피난사다리가 설치될 예정이며, 각 동 필로티 상부 단위세대 내 피난용 접이식사다리가 설치됩니다. 본공사 시 설치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설치된 위치에 주동출입구 외부 마감재료와 다소 이질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피난용 하향식 사다리는 짝수층, 홀수층 교차되게 설치되며, 발코니 상부에 피난용 하향식 사다리가 노출되어 있습니다. 하향식 피난사다리는 1층 및 하부 필로티 세대는 설치되지 않습니다.
- 각 세대별 기본제공 품목(일반가구, 주방가구, 마감자재, 기기류) 및 유상제공 품목은 상이하며, 수납공간의 크기와 마감재가 주택형별로 상이하므로 분양홍보물, 인쇄물 및 카탈로그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대에 제공되는 가전, 가구, 마감 등과 관련하여 분양홍보물과 인허가 도서가 상이할 경우 인허가 도서를 우선기준으로 합니다.
- 주택형별 옵션 선택에 따라 단열 및 벽체, 창호, 몰딩 및 걸레받이, 조명류 등의 설치위치가 상이하며, 가구와 마감재의 디자인과 품목이 상이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 품목 및 자재류 등은 법규 및 제규정 변경, 정책변경, 인허가, 단종, 수급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택형별로 제공되는 가구의 수량, 크기, 형태, 마감자재 및 사양 등이 상이하며, 일부 평면에는 미적용 될 수 있으므로 분양홍보물 및 카탈로그를 통하여 제공사양과 포함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위생도기는 절수형 기기로 설치됩니다.
- 보이지 않는 가구 배면 마감(천장, 바닥, 벽)은 별도의 마감처리가 되지 않으며, 본공사 시 가구 하드웨어 및 악세사리의 사양은 동급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택형별로 제공되는 팬트리와 드레스룸의 유무, 수량, 크기, 형태, 마감자재 및 사양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일부 평면에는 미적용 될 수 있으니 분양홍보물 및 카탈로그를 통하여 제공사양과 포함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유사 이형타입의 경우 가구의 길이 및 위치가 상이할 수 있으며, 일부 평면에는 미적용될 수 있으니 분양홍보물 및 카탈로그를 통하여 제공사양과 포함여부를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인허가 과정 및 실제 시공 시 사용성 개선을 위하여 주방가구 및 수납공간의 계획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공에 포함되어 설치되는 가구의 경우 전기배선 및 마감재 설치, 기타사유와 관련하여 설치가 완료된 이후에는 이동이 불가합니다.
- 주방 싱크대 하부장 온수분배기 가림판으로 인하여 수납공간이 줄어들거나 수납공간으로 사용이 불가할 수 있으며, 본공사 시 세대별 온수분배기 위치와 크기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가구의 힌지, 레일 등의 하드웨어는 본공사 시 동등 성능 및 이상의 다른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외부창호 디자인, 프레임사이즈, 유리두께 등의 창호 사양은 인허가 진행, 풍동실험 및 외부 입면계획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세대 내 실외기실 루버창의 형태, 규격, 손잡이 등은 실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창호는 인테리어 마감, 시스템에어컨 등의 간섭을 고려하여 창호 높이 및 위치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루버창의 색상은 같은 타입이라도 동별 및 층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목창호, 여닫이 창호 및 일반가구, 주방가구 문짝의 개폐 방향은 수분양자의 편의를 위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 시공시 욕실의 천정높이는 바닥타일의 마감구배와 천장 내 설비배관 설치 등에 의하여 도면상의 치수와 달리 일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욕실 내 샤워부스 바닥과 욕조바닥에는 난방코일이 설치되지 않으며, 별도 제어용 온도조절기가 없습니다.
- 각 층 세대 공용부 피트 내부에 급수 계량기가 설치됩니다.
-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에는 배수구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세대 내부에 공용설비 점검을 위한 점검홀이나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세대 환기를 위한 전열교환기의 디퓨저의 사양, 위치, 수량은 본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세대 수전의 높이 및 위치는 본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기계마감재(위생도기 및 수전류, 옵션상품 등)의 경우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신제품의 출시, 성능 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및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내 홈네트워크, 배선기구, 네트워크 스위치의 위치 및 사양, 제조사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내 조명기구, 홈네트워크, 세대분전함, 통합단자함, 배선기구 등의 설치위치는 본공사 시 시공여건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분전함은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주택용 분전반 업무처리방법 특별강조 지시사항에 따라 노출된 장소에 시설할 수 있으며, 추후 위치변경은 불가합니다.
- 통합단자함은 스마트정보통신건물 인증업무 처리지침에 따라 노출된 장소에 시설할 수 있으며, 추후 위치변경은 불가합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온도조절기, 배선기구, 조명기구, 세대단자함, 환기 디퓨저 등 각종 기구의 제품사양 및 위치, 개소는 실시공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내 전시품은 디스플레이 가전, 인테리어 소품가구 및 패브릭, 연출용 조명(전시용 간접조명, 스탠드, 펜던트, 스팟조명 등)과 소품 등이 포함되며, 이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연출용으로 입주 시 제공되지 않습니다.
- 발코니 선홈통 및 드레인 위치와 개수는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타입별로 윗층 세대 세탁 배수배관이 노출되어 설치될 수 있으며, 같은 타입이라도 동별로 건축구조상 배관길이 및 위치가 다를 수 있습니다.
- 세탁기와 실외기가 설치되는 공간 또는 발코니 인접실에 수전이 설치되는 곳은 겨울철 동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창문닫기 및 보온조치 등 입주자의 관리가 필요합니다.
- 단지 외 주변 위해시설 입지 등 입주자에게 불리한 사항(인접 존치 현황) 등 사업부지 현황은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북측 주출입구 주변 폭 약 24.5m 도로와 접하여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니 계약 전 확인하신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주변 도로 및 대지경계선 밖 도로는 단지 내 소유가 아니며, 실시공 시 형태, 높이, 레벨계획 등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단지는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구역 내 위치하여 부지조성공사 진행상황에 따라 현장 여건 및 관계기관 협의의견 등에 따라 공공기반시설 및 간선시설 설치계획 및 부지조성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준공 시 경계(분할)측량 후 대지면적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이에 따라 계약면적상의 대지지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급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이로 인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외부에 인접해 있는 도로 및 도시계획시설 등은 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며, 카탈로그 및 모형, CG 등 분양홍보물에 표현된 내용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작된 것으로 실시공과 건축물의 형태, 외부동선, 식재, 레벨계획 등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단지 외부에 존치하고 있는 종교시설은 카탈로그 및 모형, CG 등 분양홍보물에 표현되지 않았으며, 종교시설 외 기타 기존 기반시설에 대한 민원은 제기될 수 없습니다.
- 단지 북측으로 인접한 종교시설은 본공사 시 여건에 따라 단차 등 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는 공동주택 단지와의 접근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단지의 대지 경계선 주위 개발계획(조경, 토목, 기타 구조물 등의 계획 일체)과 경사도 및 레벨계획은 주변환경 및 외부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인해 사업계획승인 변경이 수반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설계변경 시 개별 동의를 받지 않습니다.
- 세대당 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계약면적 및 대지면적은 법령에 따른 확정측량 등으로 인해 대지면적의 증감이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며, 이 경우 보존등기 및 소유권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대지 경계선 주위 개발계획(조경, 토목, 기타구조물 등의 계획 일체)은 주변환경 및 외부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변경 등이 수반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설계변경 시 입주민의 개별 동의를 받지 않습니다.
- 본 아파트의 상수도 인입을 위한 맨홀이 설치됩니다. 설치위치는 수도사업소와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주 후 공동주택 단지 인근 도시계획시설 등의 기타 개발에 따라 소음, 진동, 조망, 채광 등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본 사업의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합니다.
- 환경영향평가 승인 협의의견(2018.09.)에 따라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구역 동측에 기아자동차 공장이 위치함에 따라 공장으로부터 배출되는 악취,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대책방안으로 완충녹지 계획 및 주거시설 이격배치(층고제한), 소음기준 초과구간 방음벽 설치 등의 환경개선계획을 고지합니다.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악취 예측결과 모든 항목에서 기준 만족
- 톨루엔 예측농도 3.5~58.6ppb (배출허용기준 : 10,000ppb)
- 자일렌 예측농도 0.4~8.1ppb (배출허용기준: 1,000ppb)
- 스티렌 예측농도 0.0~2.0ppb (배출허용기준: 400ppb)

-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구역을 관통하는 154kV 신광명~시흥T/L 지상 송전선로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와 한전과 협의하여 지중화 계획에 있으며, 사업지구 내 서측 경관녹지에 케이블헤드를 신설하여 지구 외 송전탑으로 연결할 계획입니다. 지중화선 및 케이블헤드는 주거시설, 학교시설 등의 건축물과 지중화선은 깊이 5~10m 이상, 케이블헤드는 최소 30m 이상 이격되도록 계획하였으며, 케이블헤드 주변으로 녹지 및 식재계획을 수립하여 케이블헤드로 인한 전파장해 영향을 저감토록 계획하였습니다. 도시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승인 협의의견(2018.09.)에 따라 위 내용을 고지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는 광명 구름산지구 A6블록 환지예정지로서 환지처분 시 토지(대지) 면적의 증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광명 구름산지구 내 기반시설 공사 지연으로 인한 사용승인 시기가 조정될 수 있으며, 기반시설 이용의 제한, 인근 부지조성공사 등으로 인한 안전 및 환경(소음, 분진, 진동, 미관 등) 등의 생활 불편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해당사자 공시 시행(시행근거 :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의견 2018.09.)

□ **이해당사자 공지 시행** [※ 시행근거 :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환경영팡평가 협의의견(2018.9.)]

□ 이해당사자 공지내용

구분	내용
1. 사업지구 인근 공장단지 입지 현황	○ 공장단지 입지현황 : 기아자동차 소하리공장 및 주행시험장

2. 소음 환경영향 (저감전)

예측지점		이격거리(m) 공장시설	이격거리(m) 주행시험장	예측소음도(dB(A)) 주간	예측소음도(dB(A)) 야간	기준(dB(A)) 주간	기준(dB(A)) 야간	비고
초등학교	1층	227	88	54.5	-	55	-	기준초과
	5층			57.2	-			
유치원	1층	204	150	47.7	-	55	-	기준이내
	5층			52.0	-			
중학교	1층	155	197	41.5	-	55	-	기준이내
	5층			53.7	-			
단독1	1층	170	24	55.6	55.3	55	45	기준초과
	4층			57.6	57.3			
단독2	1층	102	74	54.5	54.5	55	45	기준초과
	4층			57.4	57.4			
단독3	1층	80	232	53.8	53.8	55	45	기준초과
	4층			56.2	56.1			

3. 악취 및 발암위해도 측정현황

가. 악취측정현황(사업대상지)

○복합악취

구분	측정농도	엄격한 악취배출 허용기준 (부지경계선, 기타지역)
복합위치 (희석배수)	4~5	10~15

○지정악취물질

항목		황화수소 (ppm)	암모니아 (ppm)	스티렌 (ppm)	톨루엔 (ppm)	자일렌 (ppm)
측정현황	측정농도	불검출	0.02~0.16	불검출~0.003	0.0	0.0
	배출허용기준	0.02이하	1이하	0.4이하	10이하	1이하
	위해도지수	0.00E+00	3.04E-08~2.43E-07	0.00E+00~1.39E-08	0.00E+00	0.00E+00

나. 유해화학물질 측정현황(사업대상지)

항목		Ni ($\mu g/m^3$)	Cd ($\mu g/m^3$)	As ($\mu g/m^3$)	Cr ($\mu g/m^3$)	Hg ($\mu g/m^3$)
측정현황	측정농도	0.0009~0.0048	불검출~0.0003	0.0002~0.0026	불검출~0.0016	불검출
	환경기준(연간)	0.02	0.005	0.012	5	0.25
	위해도지수	2.16E-07~1.15E-06	0.00E+00~5.40E-07	8.60E-07~1.12E-05	0.00E+00~4.61E-07	0.00E+00
항목		포름알데히드 ($\mu g/m^3$)	염화수소 (ppm)	시안화 수소 (ppm)	염화비닐 ($\mu g/m^3$)	벤젠 ($\mu g/m^3$)
측정현황	측정농도	불검출~4.2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0.48
	환경기준(연간)	100	1	4.7	159	5
	위해도지수	0.00E+00~5.46E-05	0.00E+00	0.00E+00	0.00E+00	0.00E+00~3.74E-06

4. 사업자의 환경개선 계획

가. 소하리공장 및 주행시험장 소음 저감계획

구분	방음벽 높이(m)	방음벽 절곡구간(m)	방음벽 연장(m)	방음벽 형식	단독주택지 층고제한
소하리공장 구간	20m	-	395m	반사	3F
주행시험장 구간	15m	4m(45°)	440m	흡음	
초등학교 인접구간	15m	-	355m	반사	

구분	내용
4. 사업자의 환경개선 계획	나. 대기환경(악취포함) 개선계획 ○사업지구내 지장물 철거 -창고, 근린생활시설, 공장, 주유소 등 ○공원 및 녹지 조성

구 분	면적(㎡)	구성비(%)
사업지구	775,920	100.0
공원·녹지	135,254	17.4
근린공원	54,993	7.1
어린이공원	3,268	0.4
소공원	13,044	1.7
완충녹지	4,209	0.5
경관녹지	40,313	5.2
공공공지	19,427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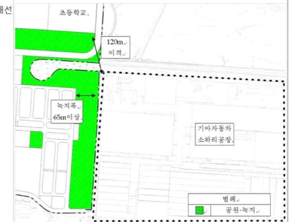

구분	내용
4. 사업자의 환경개선 계획	○환경 정화수종 식재 - 도로변 공공공지 및 녹지대 등에 수목 식재로 대기질 개선 - 기아자동차 소하리공장 주변 녹지대에 수목을 밀식하여 식재 ○에너지절약형 건축설계 - 공동주택 및 업무용건축물 에너지 절약형 건축물 설계 도입 -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 시행 다. 사업자(광명시) 관리.감독 계획 ○ 환경영향평가 협의결과에 따라 주기적인 사후환경영향조사 시행 - 조사기간 : 공사완료후 운영시 3년간 - 악취, 유해대기오염물질, 소음영향 모니터링 ○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 주변 공장 정기.수시 점검 시행 - 주변 공장시설 년 1회 이상 방지시설 적정운영 확인 및 관련 법령 위반시 행정처분 조치 명령 등 시행 ○소하리공장 관련 민원발생시 대책방안 -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완료 후 기아자동차에 대한 소음, 악취 등의 민원사항이 발생될 경우 광명시에서는 소음, 악취 측정 등을 통하여 법적 기준 초과시 개선 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시행하고 이에 따른 사후관리를 시행 - 또한 기아자동차(주)와 입주자 대표간의 중재자로서의 역할 수행하여 민원사항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

- 단지 외곽 경계에 별도로 휀스가 설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조경계획이나 인허가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근린생활시설 및 주민공동시설에는 별도의 외부인 차단을 위한 시설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단지 내 레벨이 상이하여 단차가 생기는 구간에 대해서는 조경석, 옹벽, 사면처리 등이 계획되어 있으며, 카탈로그 및 모형, CG 등 분양홍보물에 표현된 조경석, 옹벽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작된 것으로 실시공 시 현장여건 등에 따라 구간, 높이, 시공방법 등의 계획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현장여건 및 구조·성능·상품개선 등으로 인해 인허가 도서와 상이한 부분이 발생할 경우 분양 후 경미한 변경 등을 진행할 수 있으며, 해당사항에 대해서는 입주자에게 별도로 사전고지 않습니다.
- 인허가 절차상의 각종 인증 및 심사를 통해 일부 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며, 해당사항에 대해서는 입주자에게 별도로 사전고지 않습니다.
- 각종 친환경 관련 인증사항은 인증 기준 내에서 본 공사 시 세부내역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특히 창호 및 단열재 사양 등은 법적기준 열관류율에 맞춰 변경될 수 있으며, 이는 인허가 도서와 분양 시 견본주택, 준공 시 상이하더라도 법적기준 및 인증 기준 내의 변경일 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아파트 본공사 시, 현장여건 및 구조·성능·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하거나 인허가 도서와 상이한 부분이 발생할 경우 설계변경 등을 진행할 수 있으며, 해당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며, 시공상 변경 및 경미한 설계변경의 경우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본공사 시 시공여건 및 디자인 개선을 위하여 아파트 주동과 부대복리시설의 외관디자인(마감재료 및 패턴디자인, 옥상장식물, 창틀모양 등), 지하출입구, 외부시설물 (난간디테일, DA,

재활용 분리수거장 등), 조경디자인(식재, 시설물, 구조물, 조경패턴 등), 주차장 구조체 공법은 경미한 변경 등 인허가 절차를 통해 형태, 재질, 색채 등이 부위별 변경될 수 있으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의견에 의해 변경될 수 없습니다.

- 건물의 외관, 조경, 식재디테일은 인허가 및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으며, 구획선과 시설물의 위치 및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평가의 결과에 따라 본공사 시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조건 이행에 따른 설계변경(배치, 평면도, 입면도, 지하주차장 등) 사항 및 기타 변경사항이 발생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며, 경미한 사항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입주자에게 별도로 사전고지 않습니다.
- 주택규모의 표시는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현하였으며, 연면적과 전체 계약면적과는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준공 시 소방 관련부서 또는 기관 등의 협의에 따라 외부 조경, 동선 및 단위세대 내 소방시설 설치 관련한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야간경관조명 계획은 야간경관심의 의견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사업주체와 시공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자재의 독점, 품절, 품귀, 업체의 부도,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동등 이상의 다른 제품으로 변경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마감자재 내용은 주택형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니 견본주택 및 마감자재 목록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세대 내부 마감재 및 가전은 제품 수급상황에 따라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장생산 자재(타일, 벽지, 시트, 인조석 등)의 경우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 및 시방서에 의해 결정됩니다.
- 천연자재(석재, 목재 등)는 자재 특성상 동일한 무늬로 공급이 어려우므로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명시된 내용에 한정합니다.
- 본공사 시 세대 내부 마감자재의 색상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동일 모델로 설치한 경우에도 색상 및 디자인과 달리 보일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내 건립세대는 확장 시 선택 가능한 추가 선택품목의 옵션 중 하나로 건립되어 있으며, 다른옵션 선택 시 견본주택 건립세대의 우물천장, 가구, 마감형태 및 사양 등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의 옵션품목은 설치 특성상 발코니 확장 시에만 선택할 수 있으며, 일정시점 이후 시공을 위하여 자재 발주 등의 사유로 계약 이후 선택사항 변경 및 해제가 불가합니다.
- 추가 선택품목의 옵션 공사비는 옵션설치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 감소비용과 추가설치 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추가 선택품목의 설치 부위는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지정이 불가하며, 상세 사항은 추후 상품구성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선택품목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신제품의 출시, 성능개선 등의 이유로 동급 또는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의 옵션 상품구성 및 위치, 형태, 제공방식 등이 주택형별로 상이하므로 옵션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다른 주택형의 옵션품목은 설치가 불가합니다.
- 자재 양중, 시공의 용이성, 하자보수의 편의성을 위해 타일은 현장 여건에 맞도록 커팅 시공됩니다.
- 주택형별 옵션 선택에 따라 조명기구, 배선기구 등의 설치 위치와 사양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내용

보증서 번호	보증금액(원)	보증서 기간
제01282026-101-0008400호	₩228,404,000,000원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로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 (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 포함)까지

- 본 주택은 HUG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득한 아파트입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약관

제1조 (보증채무의 내용)

공사는「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채무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침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제2조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①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허위계약・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융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공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5. 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공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②공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공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공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제4조 (보증사고)

①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②보증사고일은 공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공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사업시행권 양도에 관한 사항 : 당사가 본 아파트 사업장의 시행권 및 분양자로서의 권리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수분양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시행권 인수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절차 없이도 시행자 및 분양자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합니다.
※ 공급관리에 관한 사항 : 분양수입금은 계약금을 포함하여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기재된 결제관리 계좌에 입금하여야 합니다.
※ 분양대금채권 양도에 관한 사항 : 분양자(또는 매도인)는 이 계약체결과 동시에 수분양자(또는 매수인)에 대한 분양대금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양도하고 수분양자는 이를 이의없이 승낙하기로 합니다.
※ 사업주체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를 신탁하는 경우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12 기타 안내사항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분양계약서의 일부로 구성되며, 청약자는 필히 본 공고내용을 숙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견본주택 또는 사업주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에는 관계법령이 우선, 본 공고와 공급(분양)계약서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급(분양)계약서가 우선합니다.
■ 자세한 공사 범위 및 마감재는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위치 : 경기도 광명시 일직동 511-2
■ 홈페이지 주소 : https://광명시티프라디움.com
■ 분양문의 번호 : 1899-6851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구 분	사업주체	시공회사		
상 호	㈜시티글로벌	㈜시티건설	㈜시티종합건설	㈜시티
주 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418, 3층동 3층(삼성동, 에이치에스타워)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418, 3층(삼성동, 에이치에스타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광장로 21-12, 4층 409~410호(창곡동, 위례드림시티)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광장로 21-12, 4층 401~402호(창곡동, 위례드림시티)
법인번호	110111-4888826	110111-4888834	200111-0042295	284111-0070022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단위 : 원, VAT포함)

구 분	건 축	소 방	전 기
회사명	㈜서한종합건축사사무소	㈜해우이엔지	㈜천운건설
감리금액	1,979,938,400	88,238,000	518,504,419

※ 감리금액은 감리회사와의 계약변경 등으로 증감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별도 정산하지 않음)

■ 현장위치 : 경기도 광명시 소하동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 A6BL

■ 견본주택 : 경기도 광명시 일직동 511-2